

| SRI-기본-2020-01 |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A Study on Indicators of Cultural Diversity in Suwon

최지연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심지은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권선영 (고양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기반연구실 실장)

백선혜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실장)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장현선 (장애파트너스그룹 대표)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2020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최병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0년 06월 25일

발행 2020년 06월 30일

ISBN 979-11-90343-42-8 (9330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최지연. 2020.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요약

유네스코는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이 협약의 국내 비준 및 발효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등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자 2019년 ‘수원시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방안 연구’(이성호, 2019)를 통해 정책수요조사 및 사업현황을 파악하였다.

위 연구에서 정책 방향을 통합적 사회정책으로 확장하여 사회전반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소수자 및 소수문화 집단에 대한 지원보다 시민의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문화다양성 개념을 확장한 사회통합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문화다양성 실태 파악이 요구되며,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기본틀이 되는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원시 문화다양성 실태 파악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관계자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문과 협약문, 국내 관련법 조항을 검토하고,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중앙·지방 정부의 지표개발 보고서, 학술지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지표에 필요한 항목을 선별했다. 국가 통계자료는 수원시 문화다양성 현황을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수원시 소수자 현황을 보다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소수자 및 소수문화 집단(다문화,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비주류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표 항목 및 설문조사 문항 개발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의 영역은 ① 민족·인종·국적, ② 종교·정치적 신념(타종교,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③ 신체·정신적 장애, ④ 성별, ⑤ 성적 지향·성 정체성, ⑥ 연령·세대, ⑦ 출신 지역, ⑧ 소수 문화 취향(비주류 예술 선호, 채식,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으로 구분하였다. 지표체계로 대부분은 국가지표 체계와 동일하게 정책지표, 여건지표, 활동지표, 인식지표로 구성하였으나 세부지표는 수원시의 소수자 및 소수문화 영역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정책지표는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수립 건수, 관련 지원 사업 건수, 문화다양

성 지원 사업 예산으로 구성된다. 여건지표는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 기관·시설 수, 관련 단체 수, 지원 인력 수로 평가한다. 활동지표는 소수자 및 소수문화와 관련한 활동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소수자 및 소수문화 집단들이 인식하는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및 가치 평가, 일상에서의 소수자의 사회적 거리감,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도, 시민들의 소수문화 수용도, 소수자들의 사회 정책 참여도, 문화다양성 정책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인식지표는 일반시민의 소수자 및 소수문화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 포용도, 수용도, 필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는 수원시의 문화다양성 정책, 여건, 활동, 인식 실태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해줄 수 있다. 특히 정기적인 지표조사를 통해 수원시의 문화다양성 현황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정기조사 결과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수원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행정 자료, 소수자, 시민 의견 조사 등 다방면의 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민 인식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수요와 의식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소수자 및 소수문화에 대한 수원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소수자 및 소수문화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포용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확대는 문화적으로 풍부한 수원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수원시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비전의 수원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수원시 문화다양성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후 문화다양성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연속성, 효과성을 위해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와 환류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양한 집단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에 여러 부서의 업무로 분산되어 있어 관련 부서간의 협업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문화다양성 지표, 소수자, 소수문화, 문화다양성, 다문화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제2장 문화다양성 개념 및 정책	 7
제1절 문화다양성 개념	9
1. 문화다양성 논의 배경	9
2. 문화다양성 법적 개념	11
제2절 문화다양성 정책	12
1. 문화다양성 법률 체계 및 내용	12
2. 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14
3. 수원시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16
4. 수원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현황	17
 제3장 수원시 문화다양성 현황	 19
제1절 수원시 사회문화 현황	21
1. 인구 현황	21
2. 가구 현황	23
3. 외국인 현황	24
4. 북한이탈주민 현황	27
5. 장애인 현황	28
6. 종교 현황	31

제2절 수원시 문화예술 현황	32
1. 문화재 현황	32
2. 문화기반시설 현황	33
3. 예술단 현황	34
4. 체육시설 현황	35
제4장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사례	37
제1절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모니터링 지표(2015)	39
제2절 중앙정부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41
1.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2013)	41
2.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2015)	42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2017)	44
제3절 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사례	46
1.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2017)	46
2.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2018)	47
3.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2017)	48
제4절 시사점	49
1. 소수자 및 소수문화 영역 구분	49
2. 지표체계 및 조사항목 설정	50
제5장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53
제1절 지표 개발 원칙	55
제2절 지표 개발 과정	57
1. 지표영역 및 분류체계	58
2. 수원시 소수자 집단 현황 파악	59
3. 인식조사 설문문항 검토	60
제3절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61
1. 지표영역 및 분류체계	61
2. 수원 시민대상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문문항	63

제6장 결론	73
제1절 요약 및 결론	75
제2절 정책적 제언	77
참고문헌	79
부록	81

표 차례

〈표 1-1〉 연구 체계도	6
〈표 2-1〉 협약과 법률의 문화다양성 정의 비교	11
〈표 2-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이행 사항 ·	12
〈표 2-3〉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현황	13
〈표 2-4〉 2020년도 무지개다리사업 참여기관(추후 3년간 참여 예정)	15
〈표 2-5〉 수원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및 예산(2015-2018)	17
〈표 2-6〉 수원시 다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조례 현황	18
〈표 3-1〉 수원시 주민등록인구통계(2013-2018)	21
〈표 3-2〉 수원시 인구인동 건수	22
〈표 3-3〉 수원시 가구유형별 현황(2015-2018)	23
〈표 3-4〉 수원시 연도별 외국인 현황	24
〈표 3-5〉 수원시 유형별 외국인 주민 현황	24
〈표 3-6〉 수원시 연도별 국적별 외국인 현황	25
〈표 3-7〉 수원시 동별 외국인 현황	25
〈표 3-8〉 수원시 다문화 관련 기관 현황	26
〈표 3-9〉 북한이탈주민 현황	27
〈표 3-10〉 등록장애인 현황 비교(전국, 경기도, 수원시)	28
〈표 3-11〉 수원시 장애인 세부 현황(2020)	28
〈표 3-12〉 수원시 장애인복지시설 목록	29
〈표 3-13〉 수원시 종교별 인구 현황	31
〈표 3-14〉 수원시 문화재 현황(2019)	32
〈표 3-15〉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현황(2019)	33
〈표 3-16〉 수원시 공연시설 및 지역문화복지시설 현황(2018)	33
〈표 3-17〉 수원시 예술단 현황	34
〈표 3-18〉 수원시 체육시설 현황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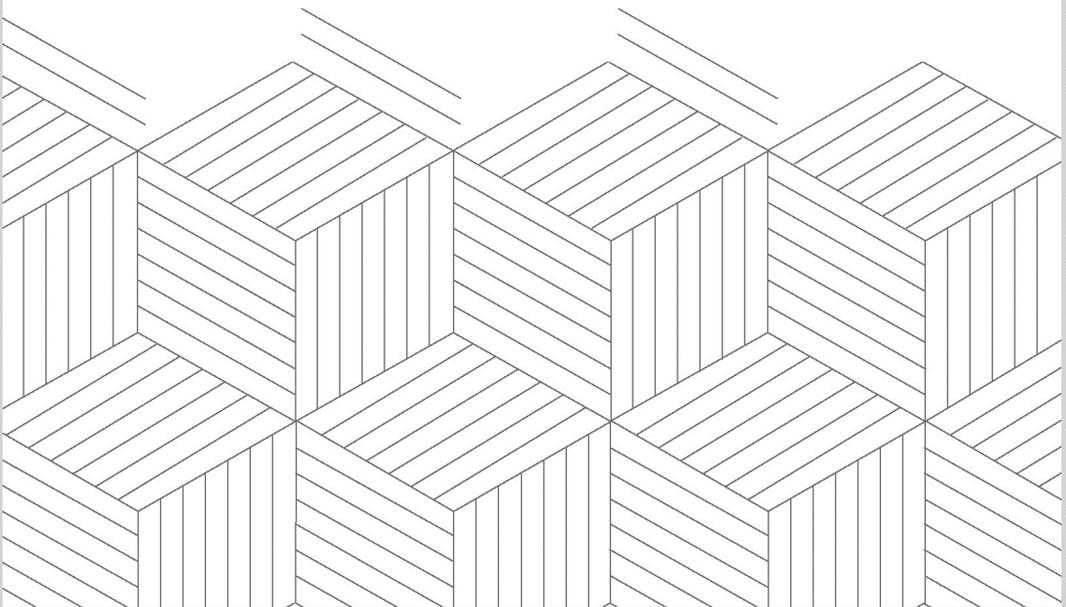
〈표 4-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모니터링 지표(2015)	40
〈표 4-2〉 2013 문화다양성 시범지표 체계(2013)	41
〈표 4-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지표(2015)	43
〈표 4-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지표(2017)	45
〈표 4-5〉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2017)	46
〈표 4-6〉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2018)	47
〈표 4-7〉 고양시 문화다양성 지표(2019)	48
〈표 4-8〉 문화다양성 지표의 소수자, 소수문화 범위 비교	49
〈표 4-9〉 문화다양성 지표 체계 및 조사 항목 비교	51
〈표 5-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56
〈표 5-2〉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절차	57
〈표 5-3〉 전문가 자문 주요의견	58
〈표 5-4〉 소수자 집단 파악을 위한 자문위원 명단	59
〈표 5-5〉 소수자 집단 파악을 위한 자문 주요내용	59
〈표 5-6〉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체계	62
〈표 5-7〉 수원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문문항 구성	63

그림 차례

〈그림 2-1〉 문화다양성 관련 논의 전개	10
〈그림 2-2〉 2020년 문화다양성 주간 ‘차이를 즐기자’ 포스터	15
〈그림 2-3〉 2020년 문화다양성 주간 거리 캠페인 사진	15
〈그림 2-4〉 문화비전2030 체계도	16
〈그림 3-1〉 수원시 인구피라미드(2020)	22
〈그림 3-2〉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사진	33
〈그림 4-1〉 유럽 및 독일의 문화다양성 범주	4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수원시는 역사적 전통과 현대적 산업시설이 공존하고, 도시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늘어나고 있다. 수원시의 외국인 주민 수는 2018년 기준 63,931명¹⁾으로 수원시 전체 인구의 약 5.2%를 차지하며, 전국 시군구 가운데 경기도 안산시(89,093명) 다음으로 그 수가 가장 많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민족·인종·국적의 다원화, 성(性) 관련 이슈의 부각, 장애인 평등권 보장, 소수 문화 취향 존중 등 문화다양성 관련 논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네스코는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에 이어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이 협약의 국내 비준 및 발효가 이루어졌다. 협약의 이행을 위해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추진 등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자 하여 2019년 ‘수원시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방안 연구’(이성호, 2019)를 통해 정책수요조사 및 사업현황을 파악하였다.

위 연구에서 문화다양성의 ‘문화’를 문화예술로 표현되는 협의의 문화 개념이 아니라 생활양식의 총체라는 광의의 문화 개념으로 해석해서 수원시 정책의 범주를 문화예술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통합적 사회정책으로의 확장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을 소수자 및 소수문화 집단에 대한 지원보다 시민의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확장한 사회통합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문화다양성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기본 틀이 되는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수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기준으로 한국 국적 미취득자, 한국 국적 취득자 및 이들의 미성년 자녀 수를 집계한 자료이며 이중 수원시 등록외국인 수는 2018년 12월 기준 41,046명임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원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기반인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기준이 되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소수자 및 소수문화집단의 활동 정도 등 수원시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보여주고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구성하고 더불어 시민 인식조사에 활용될 설문문항 안을 설계할 것이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수원시이고, 시간적 범위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이전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원시 문화다양성 현황은 가장 최근 자료로 정리했으나,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이후 발표된 주요 자료를 참고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문화다양성 개념 및 정책 조사, 지표 개발 사례 분석, 수원시 문화다양성 현황 조사를 통한 지표 개발이다. 단, 문화다양성에서 ‘문화’란 예술 및 문학 형식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 및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기준을 따른 것이다.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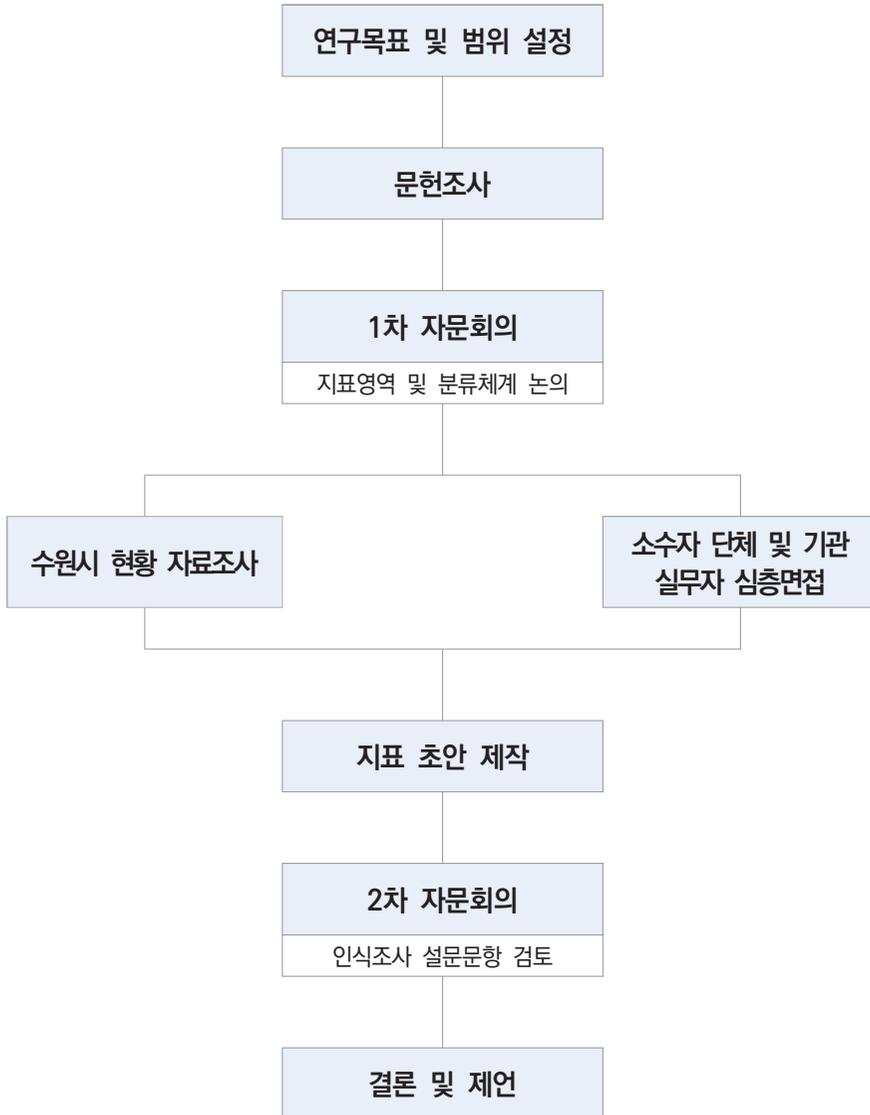
본 연구는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을 위해 문헌조사, 관계자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조사에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문과 협약문, 국내 관련법 조항을 검토하였다. 이후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중앙·지방 정부의 지표개발 보고서, 학술지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지표에 필요한 항목을 선별했다. 국가 통계자료는 수원시 문화다양성 현황을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수원시 소수자 현황 조사를 위해 관계자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면접대상은 소수자 및 소수문화 집단(다문화,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비주류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실무자이다. 면접은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접자 2명과 피면접자 1명이 비공개된 장소에서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면접의 주요 내용은 수원시의 소수자 및 소수문화 집단별 현황, 소수자 및 소수문화에 대한 수원 시민의 인식,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지표 항목 및 설문조사 문항 개발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실시하였다. 자문위원은 문화 및 정책 분야 교수와 중앙·지방 정부의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자들로 구성하였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지표영역 및 분류체계를 논의했고, 2차 자문회의에서는 시민 대상 인식조사의 설문 문항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연구진은 수원시 문화다양성 최종 지표 및 인식조사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²⁾

2) 자문회의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각 개별면담, 서면자문 방식으로 대체함

〈표 1-1〉 연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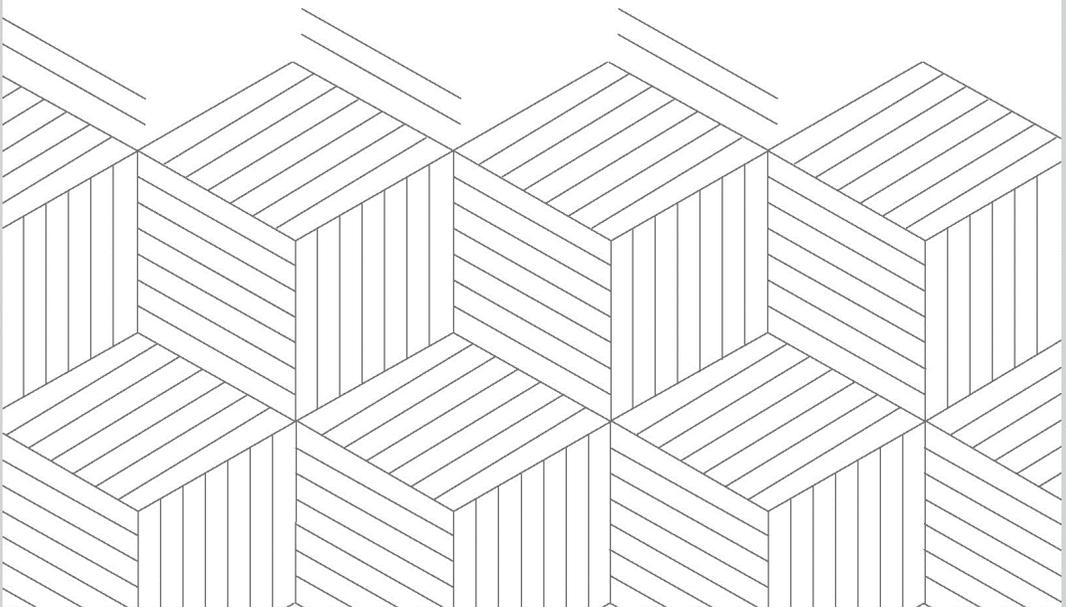


제2장

문화다양성 개념 및 정책

제1절 문화다양성 개념

제2절 문화다양성 정책



제2장 문화다양성 개념 및 정책

제1절 문화다양성 개념

1. 문화다양성 논의 배경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민족, 인종, 성적지향, 장애 여부 등의 차이를 차별과 배제의 수단으로 사용해 집단학살에 이르렀던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세계인권선언(UDHR, 1948),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1966),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1966), 소수자 권리에 관한 선언(1992) 등의 국제협약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고 세계의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었다.(권선영 외, 2019)

그러나 문화다양성이 현실에서 쟁점화 된 것은 1980년대 이후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강화되면서 부터이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증가하면서 문화 산업에서 지배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특정 문화에 의해 다른 문화들이 지배받게 되는 문화 획일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자유무역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입장 차이는 미국과 유럽 국가 및 개발도상국에서 분명히 드러났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서비스 상품의 완전한 개방을 제지할 수 있는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이후 문화주권을 지키고 문화정체성과 고유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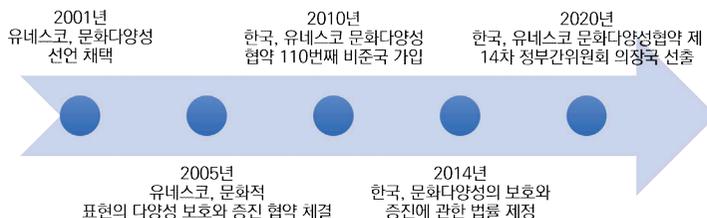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문화발전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보고서에서 문화다양성은 국가, 지역, 인류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생태계 보존을 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처럼 문화적인 다양성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논의를 발전시켜 2001년 유네스코 제 31회 정기총회에서는 「문화다양성 선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문화다양성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문화다양성의 보호, 인간 존엄성의 존중, 소수집단이나 선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 창의성의 원천인 문화유산 보호,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권리 보호, 다른 상품들과 다른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인정,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국제적 연대 등이 있다.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 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국제사회에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채택하였다.(한건수, 2015) 협약안은 찬성 148개국, 반대 2개국(미국, 이스라엘), 기권 4개국의 표결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한국은 2010년 이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되었고, 2014년 협약 체결의 후속 조치로 국내 이행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의 주요 내용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구성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문화다양성 위원회 운영,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수행, 연차보고서 및 국가보고서 작성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 미국이 한국에게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면서 국내 영화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발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늘어나면서 한국도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시사했다.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결혼이민자 가족을 중심으로 다문화 담론이 형성되었다. 물론 문화다양성은 다양한 사회 집단의 차이와 이들의 표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다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책의 대상도 문화다양성 정책은 소수자 및 국민,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 및 국민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다문화와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혼동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이성호, 2019) 본 연구에서는 문화다양성을 다문화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2-1〉 문화다양성 관련 논의 전개



2. 문화다양성 법적 개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에서는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문화’란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며 예술이나 문자의 형식 뿐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으로서의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며 표현되는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로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상의 문화다양성의 정의는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따르고 있다.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표 2-1〉 협약과 법률의 문화다양성 정의 비교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2005년 채택)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간에 전해진다.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국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2014년 제정)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해져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자료 : 유네스코.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즉, ‘문화’가 주변 환경에 적응하려는 과정에서 표현 방식이나 절차가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이라면, ‘문화다양성’은 문화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되 차이 안에서 닮은 점을 함께 찾는 것이다.(수원시, 2018) 따라서 ‘문화다양성’에서는 언어·국적·인종·취향·관습 등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활동에 배제시키지 않고 하나의 표현방식으로 보는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이성호, 2019)

제2절 문화다양성 정책

1. 문화다양성 법률 체계 및 내용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을 통해 국민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제정되었다. 문화다양성법의 주요 내용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규정, 정책기반체계 마련(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문화다양성위원회), 조사 및 보고서 발행(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차보고, 국가 보고서 작성), 정책 사업시행 방안마련(문화다양성의 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교육,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 양성)이다.(라도삼 외, 2018) 한편 문화다양성법 시행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이행 사항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표 2-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이행 사항

법률 조항별 주요 내용		조항 성격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문화다양성을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강구,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 권장·보호·육성과 이에 필요한 자원 마련	강제	해당	해당	
	정책 수립·시행, 조사·연구, 문화다양성 관련 국가 간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	권고	해당	해당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 금지	강제	해당	해당	
기본계획 수립·시행	4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강제	해당	-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이행 평가 등의 사항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문화다양성 위원회 운영	강제	해당	-	
조사연구 및 보고서 작성	실태 조사	2년마다 정기조사 시행	강제	해당	-
	연차 보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정책추진 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제출	강제	해당	-
	국가 보고서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 후 유네스코 제출	강제	해당	-
사업시행 방안마련	문화 다양성의 날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으로 지정하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체부 장관 및 광역시도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권고	해당	해당
	지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및 관련 문화시설 조성·지원	권고	해당	해당
	교육	사회구성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시행	권고	해당	해당
	전문 인력 양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전문 인력 관련 정보수집·조사, 교재개발 지원 등)	권고	해당	해당

주 : 조항의 성격 구분 기준은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 '~할 수 있다' 혹은 '노력해야 한다'는 권장조항으로 구분
 자료 : 라도삼 외, 2018.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문화다양성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가 총 17개 제정되었다. 자치단체의 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 10개, 기초자치단체 7개, 기타(교육청) 2개로 구분된다. 가장 먼저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라남도(2016.12.1. 제정)이고, 가장 최근에는 인천광역시 서구(2020.5.18. 제정)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광역·기초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조례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의 책무, 정책기반체계 마련(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위원회 운영, 문화다양성 홍보 및 교육,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지원), 실태조사 실시, 정책 시행 방안마련(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문화다양성법과 구성이 유사하다. 교육청의 조례는 문화다양성 교육 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표 2-3〉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제 개정일	구분
광역 (10)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6.12.01.	제정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3.13.	제정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3.22.	제정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5.18.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6.02.	제정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11.10.	제정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8.07.24.	일부개정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04.05.	제정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9.07.10.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2.16.	제정
기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11.16.	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8.01.05.	제정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9.06.28.	일부개정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0.04.	제정
	신안군 1004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2.19.	제정
	목포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2.23.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20.05.18.	제정
기타 (2)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2017.06.14.	제정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2017.12.28.	제정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문화다양성' 관련 자치 법규 조회 결과(2020년 6월 기준)

한편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동성애와 급진적인 이슬람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실제로 2019년에 대전광역시, 청주시, 부천시에서 문화다양성 조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시민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³⁾

2. 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범주는 다문화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젠더, 장애, 세대, 종교, 계급 차이 등을 아우르고 있다. 그 내용에 따라서는 사회통합적 관점의 정책과 문화적 예외 차원 관점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사회통합적 관점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각이고, 문화적 예외 차원 관점의 정책은 국가·사회·문화 간의 소외에서 특정 문화의 지배를 견제하고 시장의 경제논리에서 다양한 독립예술이나 기초예술 등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은 2000년대부터 급격한 이주민의 증가로 사회통합적 관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독립영화 등 문화다양성의 보장 지원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것이 문화적 예외 차원 관점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2018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수는 총 250건이고, 이 가운데 228건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수는 2015년 121건, 2016년 158건, 2017년 169건, 2018년 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은 2015년 544,537백만 원, 2016년 527,282백만 원, 2017년 363,968백만 원, 2018년 356,628백만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지방 정부에서는 2018년 기준 총 2,812건의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사업 예산은 594,402백만 원을 사용했으며 매년 사업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⁴⁾

문화다양성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다양성의 날(주간) 행사 및 무지개다리 사업이 있다. 매년 5월 21일은 UN이 지정한 세계문화다양성의 날로 국내에서는 문화다양성의 날로부터 1주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차이를 즐기자'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였다. 지역문화기관 26곳에서도 문화다양성 홍보 캠페인, 강연회와 토론회, 공모전 등을 진행했으며 수도권에서는 김포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등 8개의 기관이 참여하였다.

3)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 논란 ..."동성애 옹호"vs"왜곡 말라" (뉴시스, 정진욱기자, 2019.6.24.)
인권조례가 사라지고 있다...49개 지자체 7년 동안 71건 '철회' (한겨레신문, 오연서, 박다혜, 정환봉기자, 2020.4.3.)
'지역 전통 보호' 대전 문화 다양성 조례안, 보수 교계 반대로 무산 "이름 다른 차별금지법" (뉴스앤조이, 박요셉기자, 2019.12.13.)

4) 문화다양성 사업 관련 통계자료는 각 부처 및 기관 담당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추진된 정책 현황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그림 2-2〉 2020년 문화다양성 주간
‘차이를 즐기자’ 포스터



〈그림 2-3〉 2020년 문화다양성 주간 거리 캠페인 사진



자료 : 울산 '2020년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성료
(울산매일UTV, 2020.5.27.)

무지개다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지역민들과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의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공동체사회에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기관 26곳이 참여한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201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표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2019년에는 강원도 영월문화재단이 귀농귀촌으로 유입된 이주민들과 원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삼돌이축제’를 열었고, 종로문화재단은 ‘종로 문화다양성 연극제’ 등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표 2-4〉 2020년도 무지개다리사업 참여기관(추후 3년간 참여 예정)

지역	추진기관	비고
수도권	종로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성동문화재단, 영등포문화재단,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인천서구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8개
충청권	세종시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충주중원문화재단	6개
경상권	부산문화재단, 금정문화재단, 울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김해문화재단, 경북문화재단, 포항문화재단, 영주문화관광재단	8개
전라권	광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3개
강원권	영월문화재단	1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 2. 20. 배포)

한편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비전을 담은 보고서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였다. <문화비전2030>의 기본가치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다. 그 중 다양성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적, 인종, 종교만이 아니라 세대, 성, 성차, 장애, 지역을 아우르고, 나아가 크고 작은 예술 집단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다양성 관련 의제 가운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이 있고, 세부 과제로 ① 문화다양성 정책 위상 강화와 법제 정비, ② 문화다양성 침해(혐오표현 등) 금지와 인식 제고, ③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 ④ 언어문화 다양성 실현, ⑤ 전통 문화유산 보호와 현대화, ⑥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국내외 관광객 정책 마련 설정하고 있다. <문화비전2030>은 현재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발굴하는 과정에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그림 2-4> 문화비전2030 체계도



자료 : 새문화정책준비단·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3. 수원시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수원시의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수(2015~2018년)는 총 82건으로 연평균 20.5개의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시기별로는 2018년에 가장 많은 29건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유형별로는 문화표현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사업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 수

원시에서 시행된 인식개선 가치 확산 사업으로는 수원향교 청소년 인성교육,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운영,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이 있다. 문화표현기회확대 및 기본권 신장 사업으로는 성인 문해 교실,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통합문화이용권, 수원문화원 운영 등이 있다. 문화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다문화 한가족 축제,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사업을 진행했으며 정책추진체계 구축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이 있다. 실태파악 및 정책 개발 사업으로는 조례제정 연구를 시행하였고, 국제 문화교류 및 다양성 증진 사업으로는 국제미술교류전, 경기 국제 하프마라톤대회, 아시아남자핸드볼 선수권 대회 등이 있다.

수원시의 문화다양성 사업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연도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문화다양성 사업 자료 집계액의 편차가 심한 이유는 정부의 문화다양성 사업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담당자의 판단에 사업을 임의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다양성 증진을 염두에 두고 도입된 별도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서 고유의 목적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문화다양성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도 있다.(이성호, 2019)

〈표 2-5〉 수원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및 예산(2015-2018)

(단위 : 건, 백만 원)

분야	2015		2016		2017		2018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인식개선 가치 확산	5	1,454.6	4	1,603.8	1	4	10	755
문화표현기회확대 기본권 신장	10	1,450	11	1,580	2	29	10	2,355
문화간 공감대 형성,갈등 해소	3	98.2	6	209	7	6	2	121
정책 추진체계 구축	-	-	-	-	1	12	1	-
실태 파악 및 정책 개발 사업	-	-	-	-	-	-	1	18
국제 문화교류 및 다양성증진사업	1	0	1	0	1	110	5	3,042
합계	19	3,001.8	22	3,392.8	12	161	29	6,291

자료 : 이성호, 2019. 수원시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방안연구. 수원시정연구원. 재인용

4. 수원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현황

수원시의 소수자 및 소수문화 관련 조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족 및 여성과 관련해서는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다. 노인 관련해서는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등이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조례도 제정된 상태이다. 다문화 관련해서는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등 5개의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다. 문화예술 관련 조례는 22개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6〉 수원시 다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조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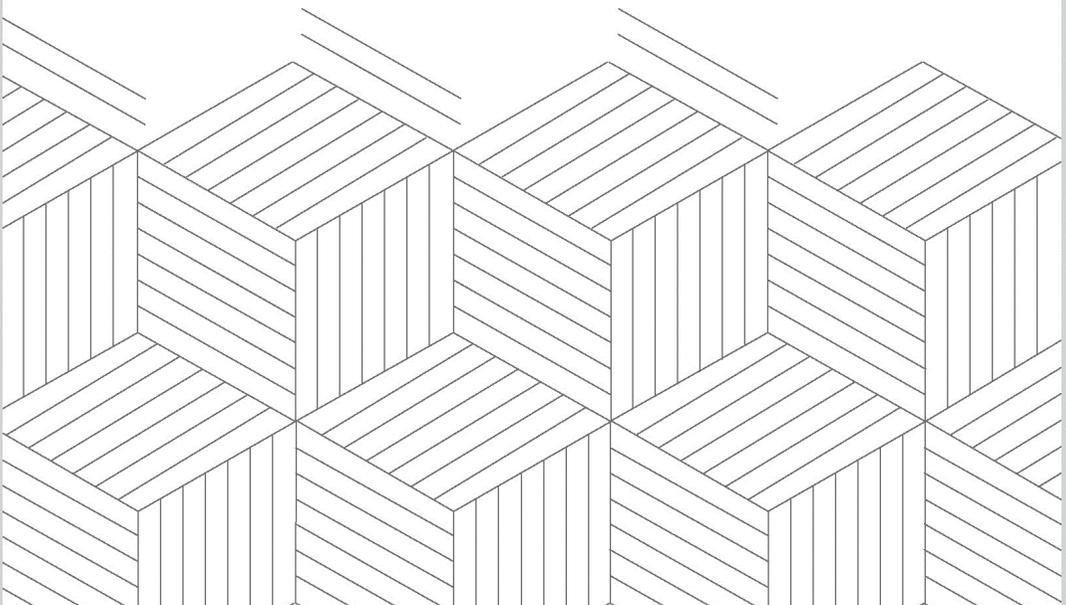
구분	조례명	제정일
다문화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09.23.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2019.09.23.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9.09.23.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09.23.
문화예술	수원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1996.10.08.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2019.07.12.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	2015.01.06.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9.05.17.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06.10.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5.02.27.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2011.08.05.
	수원시 문화상 조례	2015.02.06.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5.10.08.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5.01.06.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9.07.12.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2019.12.31.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9.05.20.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016.09.28.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5.02.27.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2017.11.17.
	수원시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5.02.27.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2017.09.27.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013.07.31.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2017.09.27.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2015.01.06.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2017.09.27.

제3장

수원시 문화다양성 현황

제1절 수원시 사회문화 현황

제2절 수원시 문화예술 현황



제3장 수원시 문화다양성 현황

제1절 수원시 사회문화 현황

1. 인구 현황

2018년 수원시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120만 1,166명이고, 등록외국인은 4만 1,046명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인구 증가율은 2013년 2.77%에서 2015년에는 1%대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0.14%로 하락하였다. 행정구역별 인구수는 권선구가 38만 8,4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팔달구가 19만 6,087명으로 가장 적었다.⁵⁾ 총 세대수는 49만 2,939세대로 전년 대비 9,381세대 증가하였다. 세대당 인구 수는 2013년 2.61명에서 2018년 2.44명으로 약 0.17명이 감소하였다. 65세 이상 인구수는 2016년에 처음으로 10만 명이 넘었으며, 2018년에는 115,200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3-1〉 수원시 주민등록인구통계(2013-2018)

(단위 : 세대,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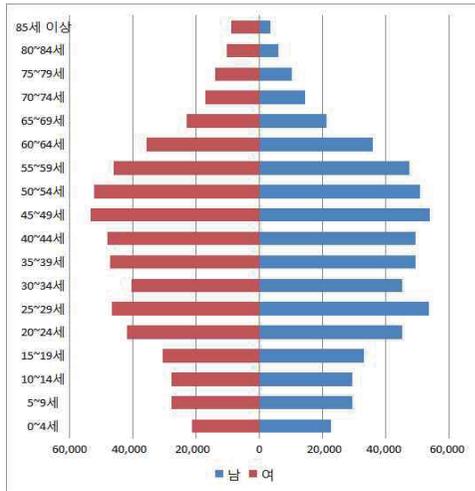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세대수	439,996	454,072	463,154	472,194	483,558	492,939	
주민등록 인구	소계	1,148,157	1,174,228	1,184,624	1,194,041	1,202,628	1,201,166
	남	578,035	591,384	596,508	601,152	605,835	604,918
	여	570,122	582,844	588,116	592,889	596,793	596,248
등록외국인	30,352	34,941	37,351	37,183	37,852	41,046	
인구증가율	2.77	2.60	1.06	0.76	0.75	0.14	
세대당인구	2.61	2.59	2.56	2.53	2.49	2.44	
65세 이상 고령자	89,227	94,472	99,750	103,992	111,667	115,200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

5) 수원시 2018년 행정구역별 인구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장안구 29만 3,955명, 권선구 38만 8,478명, 팔달구 19만 6,087명, 영통구 36만 3,692명 (통계로 보는 수원 <http://stat.suwon.go.kr>)

수원시의 연령 및 성별 인구수(2020년)는 14세 이하 유소년 15만 7,863명(13.2%), 15세~64세 이하 청장년 90만 5,174명(76.0%), 65세 이상 12만 8,506명(10.8%)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수는 2013년 8만 9,227명에서 2020년 12만 8,506명으로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59만 9,868명(50.3%)으로 여성 59만 1,674명(49.6%)보다 약간 많았다. 수원시의 인구피라미드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동시에 감소하는 종형(bell-shape)과 인구가 감소하는 선진국의 주발형(bowl-shape)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3-1〉 수원시 인구피라미드(2020)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https://stat.suwon.go.kr/>)

한편 성소수자에 대한 국내 인구통계 자료가 없었고, 수원시의 현황 또한 파악이 불가능했다. 다만 전국 대학·청년 성소수자 모임 QUV(Solidarity of University Queer Societies in Korea)에 따르면 수원시 소재 3개 대학(경기대, 경희대, 아주대)에서 성소수자 관련 모임이 있었다. 따라서 수원시 성소수자 수의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나 동아리, 인권 단체 등을 통해 이들의 활동을 짐작할 수 있었다.

수원시의 인구이동은 2019년 기준 총전입 114,932건, 총전출 117,137건으로 나타났다. 전입 신고건수가 전출 신고건수보다 적었기 때문에 순이동량은 2,205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1년 순이동량 12,693건과 비교해봐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표 3-2〉 수원시 인구인동 건수

(단위 : 건)

지역	구분	2001	2005	2010	2015	2019
경기도	총전입	1,113,115	1,242,806	1,241,914	1,156,364	1,224,125
	총전출	992,218	1,131,943	1,162,131	1,105,387	1,148,144
	순이동	120,897	110,863	79,783	50,977	75,981
수원시	총전입	118,188	128,341	112,725	115,012	114,932
	총전출	105,495	118,815	114,741	109,898	117,137
	순이동	12,693	9,526	-2,016	5,114	-2,205

주 : 1. 이동건수는 전입신고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동일시점에 동일세대 구성원이 동시에 전입신고한 경우 함께 신고한 세대원수에 상관없이 한건으로 집계

2. 전입은 전입신고건수 집계

3. 전출은 별도의 전출신고는 없으나, 전입신고자의 전출지 정보를 확인하여 집계

4. 순이동은 전입신고건수 - 전출신고건수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국가통계포털 kosis.kr)

2. 가구 현황

2018년 수원시의 일반가구는 총 45만 819가구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가구가 22만 9,531개로 전체 가구의 절반인 50.9%를 차지하였다. 2세대 가구의 비율은 전국 평균인 46.5%보다 약 4% 높았고, 경기도 평균인 51.5%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 수원시는 1인가구의 수가 12만 9,612가구로(28.8%)로 높게 나타났다.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와 전국 모두에서 4세대가구(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이상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1세대가구와 1인가구, 비친족가구는 증가해온 반면, 2세대가구, 3세대가구, 4세대가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 3-3〉 수원시 가구유형별 현황(2015-2018)

(단위 : 가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일반가구	가구수	427,554	436,304	445,309	450,819
	비율	100.0	100.0	100.0	100.0
1세대가구	가구수	58,247	58,251	61,345	63,912
	비율	13.6	13.4	13.8	14.2
2세대가구	가구수	228,695	230,716	230,896	229,531
	비율	53.5	52.9	51.9	50.9
3세대가구	가구수	21,558	21,369	20,548	19,434
	비율	5.0	4.9	4.6	4.3
4세대가구 이상	가구수	190	197	171	158
	비율	0.0	0.0	0.0	0.0
1인가구	가구수	114,246	119,552	125,011	129,612
	비율	26.7	27.4	28.1	28.8
비친족가구	가구수	4,618	6,219	7,338	8,172
	비율	1.1	1.4	1.6	1.8

주 : 1.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2. 일반가구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국가통계포털 kosis.kr)

3. 외국인 현황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2018년 수원시의 거주외국인⁶⁾은 63,931명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외국인 수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의 경우 그 수가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경기도 안산시(89,093명) 다음으로 수원시가 두 번째로 외국인 수가 많다.⁷⁾

수원시 전체 외국인 63,931명 가운데 한국국적취득자가 5,832명인 반면 국적미취득자가 53,689명, 외국인 주민 자녀(한국국적 취득자 혹은 한국인과 결혼한 국적미취득자의 미성년 자녀) 4,4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미취득자 가운데는 기타 유형이 15,8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14,823명, 외국국적동포가 14,474명의 수가 많았다. 결혼이민자는 4,508명으로 유학생 4,069명의 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4〉 수원시 연도별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원수	31,678	35,657	40,537	41,351	47,237	51,258	54,284	58,302	63,931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국가통계포털 kosis.kr)

〈표 3-5〉 수원시 유형별 외국인 주민 현황

(단위 : 명)

연도	합계	한국국적 미취득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외국국적 동포	유학생	기타		
2015	51,285	16,122	3,543	8,802	2,272	11,681	4,882	3,956
2016	54,284	14,311	4,245	10,629	2,818	13,191	5,169	3,921
2017	58,302	12,747	4,329	13,081	3,360	15,075	5,574	4,136
2018	63,931	14,823	4,508	14,474	4,069	15,815	5,832	4,41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국가통계포털 kosis.kr)

6)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단기체류자 등을 포함한 수치임
 7) 전국 시군구별 순위는 안산시 89,093명, 수원시 63,931명, 화성시 59,278명, 영등포구 56,483명 순임

국적에 따라서는 중국 조선족의 수가 34,031명(63.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중국 7,340명(13.7%), 베트남 2,737명(5.0%), 미국 1,144명(2.1%)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과 중국인의 수를 합치면 41,371명으로 전체의 7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원시에는 중국계 혹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6〉 수원시 연도별 국적별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

연도	합 계	중국 (조선족)	중국	일본	대만	몽골	베트남	태국	미국	기타
2015	42,420 (100.0%)	27,937 (65.9%)	6,241 (14.7%)	309 (0.7%)	285 (0.7%)	297 (0.7%)	1,338 (3.2%)	445 (1.0%)	1,003 (2.4%)	4,565 (10.8%)
2016	45,194 (100.0%)	28,915 (63.9%)	7,013 (15.5%)	362 (0.8%)	275 (0.6%)	423 (0.9%)	1,609 (3.5%)	529 (1.2%)	966 (2.1%)	5,102 (11.3%)
2017	48,592 (100.0%)	30,772 (63.3%)	7,471 (15.3%)	358 (0.7%)	292 (0.6%)	512 (1.1%)	2,080 (4.2%)	772 (1.6%)	796 (1.6%)	5,539 (11.4%)
2018	53,689 (100.0%)	34,031 (63.4%)	7,340 (13.7%)	371 (0.7%)	249 (0.5%)	570 (1.1%)	2,737 (5.1%)	1,570 (2.9%)	1,144 (2.1%)	5,677 (10.6%)

주 : 1. 외국이주민 중 한국국적 미취득자에 대하여 작성

2. 괄호는 각 년도의 전체 외국인 현황 대비 해당 국적자의 비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국가통계포털 kosis.kr)

행정구역별로는 팔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2,8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권선구 18,467명, 장안구 11,888명, 영통구 10,685명으로 나타났다. 동별로는 고등동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5,235명, 세류2동 4,410명, 매산동 4,024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3-7〉 수원시 동별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합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영화동	그 외	세류2동	그 외	고등동	매산동	그 외	영통1동	그 외
2016	54,284	2,703	6,789	3,439	11,163	4,381	3,304	12,966	1,908	7,631
2017	58,302	2,959	7,426	3,906	12,244	4,739	3,443	13,641	1,942	8,002
2018	63,931	3,341	8,547	4,410	14,057	5,235	4,024	13,632	1,885 [†]	8,800

주 : 2018년에는 영통1동이 분동되어 당해 수치는 영통3동에 해당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국가통계포털 kosis.kr)

한편 수원시에는 수원시 다문화정책과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 총 17의 다문화 관련 기관이 있다. 기관별로 주요 사업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주로 외국인들의 사회의 사회적응 지원(취직, 상담, 자녀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8〉 수원시 다문화 관련 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연락처	주소	주요사업
1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228-3606 228-3608 228-3607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다문화정책개발, 다문화 가족, 결혼중개업 관리, 외국인업무지원
2	수원출입국관리 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	695-3812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영통동)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상담, 국제결혼교육
3	수원남부경찰서 정보보안과 외사팀	899-0376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72(매탄동)	외국인 인권침해, 범죄피해상담 및 수사
4	수원엠마우스	257-8501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27번길54-14	외국인상담 및 쉼터운영
5	수원YWCA	252-5111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34번길 34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6	수원여성 인력개발센터	206-1919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40, 평익빌딩 8층(영통동)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7	(사)경기다문화 사랑연합회	255-8886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15-17(교동)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8	수원다문화센터	255-2788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15-17(교동)	결혼이민자 상담
9	수원이주민센터	070-8671 -3111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6(매산동)	외국인노동자 상담, 교육운영 등
10	경기대 다문화교육센터	252-3111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덕문관 5207호(이의동,경기대학교)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11	다누리콜1577-1 366(수원센터)	257-1841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31, 5층(화서동)	이주여성 폭력피해예방 상담 및 인권보호
12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45-1319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61, 6층 (중동,우림빌딩)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13	수원여성의전화	232-7780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61, 7층 (중동, 우림빌딩)	이주여성상담, 인권보호
14	수원다문화도서관 지구별상상	257-1365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27번길 31	다문화도서관대여 및 문화 예술 강좌
15	길벗다문화센터	271-6778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72 성원약국 3층	결혼이주여성 직업창출 지원(LED 플라워 제작)
16	H-NET PLUS	226-0318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7(동성빌딩 3층)	중국 중도입국 청소년대상 한글교육 및 검정고시
17	(사)제한외국인 지원협회	305-2666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8번길 4	이민통합활동지원, 외국 인정착활동지원 등

자료 : 수원시청 홈페이지

4. 북한이탈주민 현황

2019년 5월 1일 기준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은 전체 28,652명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21,604명, 남성 7,048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중장년층에 속하는 40대(8,610명)와 50대 이상(7,710명)이 가장 많았다.

2016년 북한이탈주민 시군구별 실태보고서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이 5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 10곳을 선별하였다. 10대 지역에는 서울 3개 지역(양천구, 노원구, 강서구), 경기 6개 지역(화성시, 수원시, 평택시, 용인시, 김포시, 안산시), 인천 1개 지역(남동구)이 포함 된다. 전체 시군구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인천 남동구 1,857명(6.7%)이고, 그다음으로 서울 양천구 1,152명(4.1%), 서울 노원구 1,120명(4.0%), 서울 강서구 995명(3.6%)의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843명(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원시 693명(2.5%)로 나타났다. 수원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693명 가운데 남성 172명, 여성 521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3%, 20대 22.0%, 30대 21.6%, 40대 28.6%, 50대 24.5%로 나타났으며, 남한 거주기간은 1~3년 미만 7.3%, 3~5년 미만 19.6%, 5~10년 미만 47.8%, 10년 이상 25.3%로 나타났다.

〈표 3-9〉 북한이탈주민 현황

(단위 : 명)

거주기간	성별	거주지역	합계	연령대				
				20대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28,652	805	4,310	7,217	8,610	7,710
5년 미만	남성	수도권	803	66	254	206	142	135
		비수도권	329	25	94	75	60	75
	여성	수도권	3,214	99	929	912	754	520
		비수도권	1,777	33	333	535	487	389
5년 이상	남성	수도권	3,997	196	825	1,043	870	1,063
		비수도권	1,919	84	299	439	425	672
	여성	수도권	10,348	207	1,134	2,594	3,478	2,935
		비수도권	6,265	95	442	1,413	2,394	1,921

주 : 1. 사망자, 거주불명자, 이민자, 특별보호대상자, 보호취소, 보호중지, 보호종료, 비보호자 등은 제외됨
 2. 거주지역에서 수도권은 전국 17개 시도 기준 3개 광역시도(서울, 경기, 인천)이며, 비수도권은 14개(부산, 광주, 대전, 울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임
 3. 거주기간은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을 의미
 자료 : 2019년 5월 기준 통일부 등록자료, 남북하나재단. 2020.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서 재인용

5. 장애인 현황

2018년 12월 기준 수원시 등록장애인은 42,393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25,480명으로 여성 17,570명 보다 많았다. 수원시 등록장애인 2011년 대비 2018년에 8.8%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2.6%)과 경기도(8.4%) 평균보다 높았다. 수원시 장애유형별 인구수(2020년)는 지체장애 20,094명, 청각장애 5,389명, 시각장애 4,474명, 뇌병변 장애 4,349명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는 권선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14,6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팔달구 거주자가 8,330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3-10〉 등록장애인 현황 비교(전국, 경기도, 수원시)

(단위 : 천 명, %)

년도	전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용인시
2011년	2,519,241	505,052	38,953	35,741	35,918	36,550	30,556
2014년	2,494,460	508,330	40,406	36,584	35,345	35,479	31,157
2016년	2,511,051	522,437	41,411	38,215	35,860	35,156	32,279
2018년	2,585,876	547,386	42,393	39,758	36,930	35,834	34,438
증감률	2.6	8.4	8.8	11.2	2.8	-2	12.7

주 : 1.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2011-2018) 자료
 2. 경기도 31개 시, 군 중 등록장애인이 많은 5개 지역 자료 추출
 3. 증감률은 2011년 대비 2018년 증가율
 자료 : 한연주, 2019. 수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재인용

〈표 3-11〉 수원시 장애인 세부 현황(2020)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전체	남	여				
합계	43,050	25,480	17,570	10,945	14,617	8,330	9,158
지체장애	20,094	11,938	8,156	5,133	6,962	3,900	4,099
시각	4,474	2,766	1,708	1,145	1,460	923	946
청각	5,389	2,956	2,433	1,382	1,876	952	1,179
언어	436	317	119	101	149	84	102
지적	3,302	2,024	1,278	866	1,071	628	737
뇌병변	4,349	2,472	1,877	1,108	1,432	830	979
자폐성	699	603	96	164	198	90	247
정신	1,530	747	783	364	507	401	258
신장	1,876	1,063	813	480	637	354	405
심장	79	50	29	26	25	10	18
호흡기	152	119	33	35	53	34	30
간	237	158	79	49	81	43	64
안면	48	23	25	9	17	11	11
장루,요루	271	177	94	65	91	53	62
뇌전증	114	67	47	18	58	17	21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https://stat.suwon.go.kr>),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제공 자료

한편 수원시에는 수원시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45개였고, 유형에 따라서는 복지관, 그룹홈, 재활센터 등으로 구분되었다. 기관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2〉 수원시 장애인복지시설 목록

연번	명칭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1	바다의 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58번길 142 (이목동)	251-4930
2	수봉재활원	수원시 권선구 수봉로 43(탑동)	293-9501
3	사랑을 나누는집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04번길 35-23(영화동)	251-9811
4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단기보호센터	수원시 영통구 창릉대로 255(이의동)	207-1501
5	수원밀알사랑터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 57-11,101동 510호(연무동, 목화아파트)	255-3204
6	원천그룹홈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24, 301호(곡반정동)	217-6560
7	몬띠의집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19번길18, 502동 104호(천천동, 일성아파트)	307-0985
8	미리암그룹홈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847번길 30(조원동)	256-0358
9	마르파의집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19번길 18, 505동207호(천천동, 일성아파트)	307-9098
10	해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12번길 43, 301호(파장동)	253-3747
11	브솔그룹홈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1089, 102동 105호(매탄동, 금성아파트)	070-7759-1088
12	니도그룹홈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29번길 7, 302호(매탄동)	213-1702
13	바르나바의집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19번길 18, 502동204호(천천동, 일성아파트)	269-0929
14	양념정	수원시 권선구 효탑로16번길 98(탑동)	292-1625
15	에벤에셀의집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80번길 14(세류동)	222-2248
16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시 영통구 창릉대로 255(이의동)	207-1501
17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호매실동)	893-2100
18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24(오목천동)	296-6255
19	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86(정자동)	248-5340
20	북수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44번길 27(파장동)	246-2160
21	구세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192번길 65-5(서둔동)	257-3404
22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주간보호센터	수원시 영통구 창릉대로 255(이의동)	207-1501

23	꿈자리보금자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0(매산로3가)	224-6491
24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22(이의동)	8006-7460
25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주간보호센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호매실동)	893-2180
26	노을빛장애인주간보호센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41번길 24(지동)	256-9004
27	수원시장래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호매실동)	251-7807
28	수원시수어통역센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호매실동)	254-0037
29	경기도시각장애인도서관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57번길 27-4 3층(화서동,우영프라자)	213-7722
30	수원시장래인종합복지관 부설사랑샘도서관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55(이의동)	207-1501
31	무궁화전자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05(원천동)	210-2312
32	바다의별직업재활센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58번길 142(이목동)	251-0266
33	엘림보호작업장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101동 712호(신동,디지털엠피아2)	695-6530
34	자혜직업재활센터	수원시 권선구 수봉로 47(탑동)	298-6813
35	사회복지법인구세군장애인재활작업 장	수원시 권선구 새터로37번길 7-9(세류동)	258-4580
36	사)작은행동 한사랑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58번길 31 (영화동)	256-1331
37	굿드림장애인작업장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74, 201~202호 (원천동,팩토리월드)	211-2982
38	행복을 만드는 집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103동 402~ 404호(신동, 디지털엠피아2)	695-7615
39	Happy해누리작업장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74, 102호(원천동, 팩토리월드)	213-1208
40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호매실동)	893-2193
41	경기안마수련원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507번길 12-14, 1층(인계동)	234-2655
42	함께걸음직업재활센터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306, 1동 B106호(원천동,이노플렉스)	8002-3344
43	에이블희망일터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274, 306호(원천동, 팩토리월드)	217-6428
44	에이블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39, 2층	248-7765
45	브솔직업적응훈련시설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74, 3층 304호(원천동, 팩토리월드)	212-1401

자료 : 수원시청 홈페이지

6. 종교 현황

통계청 2015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수원시 전체인구 1,136,756명 가운데 471,119명(41.4%)가 종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개신교)가 49.0%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불교 26.5%, 기독교(천주교) 22.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천도교 0.4%, 기타 0.4%, 유교 0.3%, 원불교 0.3% 대종교 0.01% 신자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3-13〉 수원시 종교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경기도	수원시
총 인구수	11,869,038	1,136,756
계 (종교 있음)	5,140,688	471,119
불교	1,267,172	124,636
개신교	2,729,767	230,782
천주교	1,065,430	108,039
원불교	12,674	1,339
유교	18,312	1,470
천도교	18,106	1,987
대순진리회	8,228	798
대종교	601	37
기타	20,398	2,031

자료 : 통계청, 2015년 인구총조사 (국가통계포털 kosis.kr)

제2절 수원시 문화예술 현황

1. 문화재 현황

수원시 문화재는 2019년 기준으로 총 90개가 있다. 유형별로는 국가지정문화재 18개, 도 지정문화재 46개, 향토유적 20개, 등록문화재 6개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재 유형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4〉 수원시 문화재 현황(2019)

구분	종별	명칭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	수원 창성사지 진각국사탑비, 수원 팔달문, 수원 화서문, 채제공 초상 일괄-시복본, 박유명 초상, 영조어필-음공진장첩, 박태유필적-백석유목첩, 수원 방화수류정, 수원 서복공심돈, 조선경국전, 수원 화령전 운한각, 복도각, 이안청
	사적	수원 화성, 수원 화령전, 수원 화성행궁
	국가무형문화재	발탈, 경기도 도당굿, 석장
	국가민속문화재	수원 광주이씨 고택
등록 문화재	등록 문화재	구 수원문화원, 구 수원시청사, 경기도청사 구관, 경기도지사 구 관사,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수원 구 부국원
경기도 지정 문화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지지대비, 팔달문동종, 봉녕사 석조삼존불, 봉녕사 불화(신중탱화,현왕탱화), 수원 청련암 영산회상도, 김후 영정 및 영정함, 호수호수함 일괄, 흥재전서, 김우형 서첩 기오재희묵, 윤증 서첩 유봉필첩, 조돈영서, 정조 어필 비망기, 정조사 조심태어찰첩, 정조사 박종보어찰첩, 번암선생집, 두류청사첩, 삼사탑명첩, 정조한글어필-빈풍칠월편, 영조에필-송죽, 영조 사 조현명 어필첩, 정조어필-주희시첩, 정조어필-유시, 성수침 서첩-청송진묵, 송준길 서첩-민기묘표, 신도비명, 김수증 서첩-곡운희묵, 번암고, 상덕총록, 체제공 관련 고문서 일괄
	경기도 기념물	노송지대, 김준룡장군 전승지 및 비, 심온선생묘, 팔달산지석묘군, 아담스기념관, 수원축만제, 수원여기산선사유적지, 수원 창성사지
	경기도 문화재 자료	수원향교, 박유명초상 모본, 수원 청련암 아미타회상도, 수원 청련암 신중도, 수원 청련암 독성도, 수원 청련암 산신도, 수원 청련암 칠성도, 영조어필 벼루
	경기도 무형문화재	승무,살풀이춤, 소목장, 단청장, 불화장
수원시 향토 유적	수원시 향토유적	항미정, 거북산당, 수원역대목민관 송덕비군, 미륵당, 정유선생묘, 이목동 출토 석곽묘, 꽃외 제사유적지, 고색동코잡이놀이밧도당, 이의동길마재줄다리기, 버드내 산제당, 벌말도당굿밧도당, 동래정씨 약사불, 만석거, 숙지산 화성 채석장, 화성관련 표석 일괄, 전주류씨 효자정문, 화성문화제‘능행차연시’, 조선의무예‘무예24기’, 이고 묘역, 안동김씨 참의공파 세장 묘역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

2. 문화기반시설 현황

2019년 기준 수원시에는 공공도서관 26개, 박물관 7개, 미술관 2개, 문예회관 3개, 문화원 1개를 보유하고 있다. 시설물 운영 형태에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지자체 운영 23개, 교육청 운영 2개, 사립 1개로 구분되며, 박물관은 국공립 운영 4개, 사립 1개, 대학 2개가 있다. 미술관은 국공립 1개, 사립 1개가 운영 중이다. 공연시설(2018년)로는 공공공연장 9개, 민간공연장 3개, 영화관 8개가 있으며, 지역 문화복지 시설로 시군구민회관 1개와 종합사회복지관 14개, 청소년회관 3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현황(2019)

(단위 : 개)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26	23	2	1	7	4	1	2	2	1	1	3	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표 3-16〉 수원시 공연시설 및 지역문화복지시설 현황(2018)

(단위 : 개)

공연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관	스크린수	시군구민 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회관	
9	3	8	58	1	14	3	

자료 : 수원시 2018 기본통계

〈그림 3-2〉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사진



주 : 수원푸른숲도서관(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우)

자료 : 수원시 포토뱅크

3. 예술단 현황

수원시에서는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향악단이 가장 먼저인 1982년에 창단되었으며, 그다음으로 합창단(1983년 창단)이 설립되었다. 연극단은 가장 최근인 2015년에 창단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단원 수는 교향악단 96명, 합창단 53명이, 연극단 43명으로 나타났다. 연극단의 경우 전체 43명의 단원 가운데 37명이 상임, 6명이 비상임 단원으로 나타났다.

〈표 3-17〉 수원시 예술단 현황

(단위 : 명)

연도	교향악단 (1982.4.17. 창단)			합창단 (1983.2.1. 창단)			연극단 (2015.7.13. 창단)		
	단원	상임	비상임	단원	상임	비상임	단원	상임	비상임
2013	99	98	1	53	53	-	-	-	-
2014	99	98	1	53	53	-	-	-	-
2015	102	101	1	53	52	1	36	35	1
2016	99	99	-	53	52	1	37	36	1
2017	97	97	-	52	52	-	44	37	7
2018	96	96	-	53	53	-	43	37	6

자료 : 수원시 2018 기본통계

4. 체육시설 현황

수원시는 2018년 기준 공공체육시설 209개, 신고체육시설 1613개를 운영 중이다. 공공체육시설 가운데는 간이운동장이 164개로 가장 많고, 축구장 12개, 체육관 12개, 테니스장 9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고체육시설은 당구장이 719개로 가장 많으며, 체육도장 357개, 체력 단련장 250개, 골프연습장 234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8〉 수원시 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

구분		2016	2017	2018	
공공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1	1	1	
	축구장	12	12	12	
	야구장	1	1	2	
	테니스장	10	9	9	
	씨름장	1	1	1	
	간이운동장	218	163	164	
	체육관	구기	3	3	3
		투기	0	0	0
		생활	8	9	9
	수영장	2	5	5	
	국궁장	1	1	1	
	양궁장	1	1	1	
	골프연습장	1	1	1	
신고 체육시설	빙상장	1	1	1	
	종합체육시설	5	5	5	
	수영장	16	17	17	
	체육도장	426	376	357	
	골프연습장	216	288	234	
	체력단련장	214	228	250	
	당구장	742	712	719	
	썰매장	2	1	2	
	무도장	1	6	2	
	무도학원	27	26	26	

자료 : 수원시 2018 기본통계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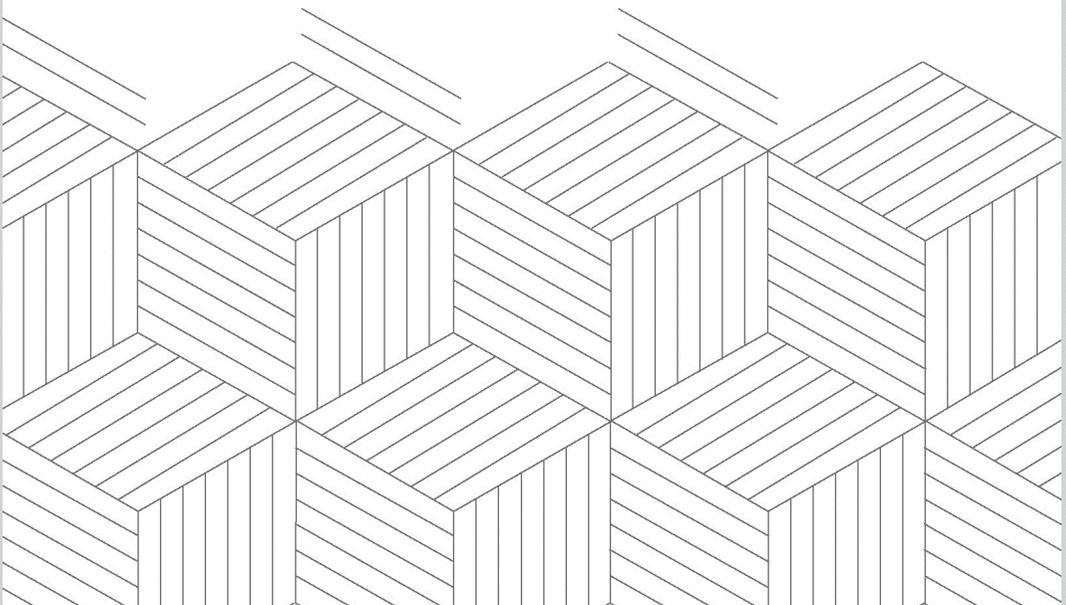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사례

제1절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모니터링 지표(2015)

제2절 중앙정부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사례

제3절 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사례

제4절 시사점



제4장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사례

지표란 특정 현황을 식별·분석하기 위한 도구를 의미하며, 지표를 활용해 정책 혹은 사업 목표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지표는 소수자, 소수문화와 관련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일반현황, 인식 및 태도, 문화다양성 정책의 효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수용도·친밀도·포용도 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15)

그동안 문화다양성의 현황과 실현을 위한 노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에 대한 여러 연구사례들이 있다.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실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제안하고 있다. 국내의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사례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연구(2013, 2015, 2017)와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인천발전연구원, 2017),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부산광역시·부산문화재단, 2018)가 있다. 그밖에 김해시, 고양시, 김포시 등에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문화다양성과 관계되는 조사로는 다문화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혐오표현 실태조사 등이 있다.

제1절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모니터링 지표(2015)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이 제출한 71개 보고서를 참고하여 협약의 목표가 실행되고 있는지 시간에 따른 변화와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제안하였다. 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목표로는 ① 문화 거버넌스의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 정립, ②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균형적 공급과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들의 이동성의 활성화, ③ 지속가능한 개발 체제 안으로 문화 통합, ④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이다.

각 목표에 따른 모니터링 분야는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의 지속가능한 체제 지원을 위해서는 문화정책, 공공서비스 미디어, 디지털환경,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모니터링 한다.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균형적 공급과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들의 이동성 증대를 위해

서는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의 이동성,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조약 및 협정을 검토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체제에 문화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계획, 국제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을 위해서는 성평등, 예술적 자유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다. 모니터링 분야별 핵심 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모니터링 지표(2015)

목표	모니터링 분야	핵심 지표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 체계 지원	문화정책	다양한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창작,생산, 유통, 접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문화 정책 지원, 정책 결정에 다수의 정부기관 참여. 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 과정에 협약 당사국의 적극적인 지원
	공공미디어 서비스	미디어의 자유와 다양성을 위한 입법적 기반 지원, 공공서비스 미디어 목표의 법적 규정 및 보장, 모든 사회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공공서비스 미디어의 정책 및 조치
	디지털 환경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위한 입법적 기반 지원,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창의성 증진 및 시민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조치, 역동적이고 다양한 디지털 문화산업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시민사회와 협력	시민사회를 위한 입법 및 규정 체계 마련, 정책 계획과 실행에 시민사회의 참여, 국가 및 세계 차원에서 협약의 거버넌스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균형적인 공급 및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들의 이동성 증진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의 이동성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적 기반, 남반구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남반구의 이동성을 촉진하는 비정부기구의 계획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지원하는 입법적 기반, 문화 상품의 국제적 흐름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문화 서비스의 국제적 흐름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조약과 협정	여러 장(場)에서 당사국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증진, 국제 및 지역 조약과 협정에 협약에 대한 명시적 언급, 협약에 부합하는 국제 및 지역 조약과 협정을 이행하는 정책 및 조치
지속가능한 개발 체제로의 문화 통합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과 계획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계획에 문화 통합, 문화자원의 분배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지역사회의 취약 집단이 문화자원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조치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	국제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에 문화 통합, 개발도상국의 문화 및 창의 산업에서 인적 및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개발도상국의 창의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	성평등	문화 분야에서 성평등을 보장하는 입법 체계,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창작자 및 생산자로서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하는 정책 및 조치
	예술적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원하는 입법적 기반, 예술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정책 및 조치, 예술가의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증진하는 정책 및 조치

자료 : 유네스코. 2015. 문화정책의 재구성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10년 동안의 문화다양성 표현 증진

제2절 중앙정부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사례

1.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2013)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2013)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화다양성 지표 체계를 구축한 연구이다. 지표 영역은 ① 사회문화영역(다문화적 요소), ② 문화정체성영역(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소수자로 구분되는 요소), ③ 문화예술영역(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예술 외에 비주류 예술)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환경, 제도, 인식의 세 가지 층위와 결합하여 세부영역의 체계를 구성하였다. 사회문화 영역 19개 지표는 각각 국적(6), 권역(4), 종교(4), 언어(5) 등 4개 항목, 문화정체성 영역 46개 지표는 각각 여성(9), 성소수자(9), 장애(8), 유아아동(6), 청소년(7), 노인(7)의 6개의 세부 항목, 문화예술 영역 42개 지표는 각각 독립문화예술(20), 다원문화예술(6), 커뮤니티문화예술(8), 다국적 문화예술(8)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지표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문화예술영역을 독립문화예술, 다원문화예술, 커뮤니티문화예술, 다국적 문화예술로 세분화하였다는 것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행정부처 및 관련기관 현황 조사(환경·제도지표), 일반국민, 소수자, 문화예술인 대상 설문조사(인식지표)가 있다.

〈표 4-2〉 2013 문화다양성 시범지표 체계(2013)

영역	세부 영역	지표 항목
사회문화 영역	국적	국적 관련 환경, 제도, 인식 지표
	권역	권역 관련 환경, 제도, 인식 지표
	종교	종교 관련 환경, 제도, 인식 지표
	언어	언어 관련 환경, 제도, 인식 지표
문화정체성 영역	성 다양성(여성, 성소수자)	성 관련 환경, 제도, 인식 지표
	장애	장애 관련 환경, 제도, 인식 지표
	세대(유아·아동, 청소년, 노인)	세대 관련 환경, 제도, 인식 지표
문화예술 영역	독립문화예술	독립문화예술 관련 환경, 제도, 인식 지표
	다원문화예술	다원문화예술 관련 환경, 제도, 인식 지표
	커뮤니티문화예술	커뮤니티 문화예술 관련 환경, 제도, 인식 지표
	다국적문화예술	다국적 문화예술 관련 환경, 제도, 인식 지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p.24

2.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2015)는 2013년 시행된 기초연구 결과를 보완하고, 지수 산출 및 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2013년 시범지표는 사회문화, 문화정체성, 문화예술의 3대 영역별 환경, 제도, 인식의 3개 지표로 구성되었던 것을 2015년 연구에서는 3대 소수자 유형별 4대 지표로 수정하였다.

지표조사의 영역을 크게 정책지표, 여건지표, 활동지표, 인식지표로 분류하였다. 정책지표는 각 지자체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세부지표로는 정책 수립 및 실행, 지원예산의 적절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건지표는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인프라가 적절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지표로는 기반시설 여건, 자원 여건, 지원인력 여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지표는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인 소수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 등 문화다양성 지원정책의 성과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서 참여도, 친밀도, 만족도, 포용도, 평등도 등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인식지표는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 정도와 소수자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친밀도, 수용도, 필요도, 포용도, 평등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 조사 영역의 대상 소수자 집단은 ① 소수자(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② 하위문화(청소년, 노인, 전통문화, 지방문화), ③ 비주류문화예술(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이다. 활동지표의 경우 각 소수자 집단을 문화예술 '향유 집단'과 '창조 집단'으로 구분한 뒤 활동 특성에 따라 지표 조사 항목을 달리 구성하고 있다.

지수 산출 절차는 지표 조사 항목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지표, 여건지표, 활동지표, 인식지표의 지표값 추출 → 데이터의 형태와 특성이 각각 다른 지표별 지표값을 100점 환산점으로 표준화 → AHP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산출하고, 표준화된 지표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문화다양성 지수 산출로 이어진다.

〈표 4-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지표(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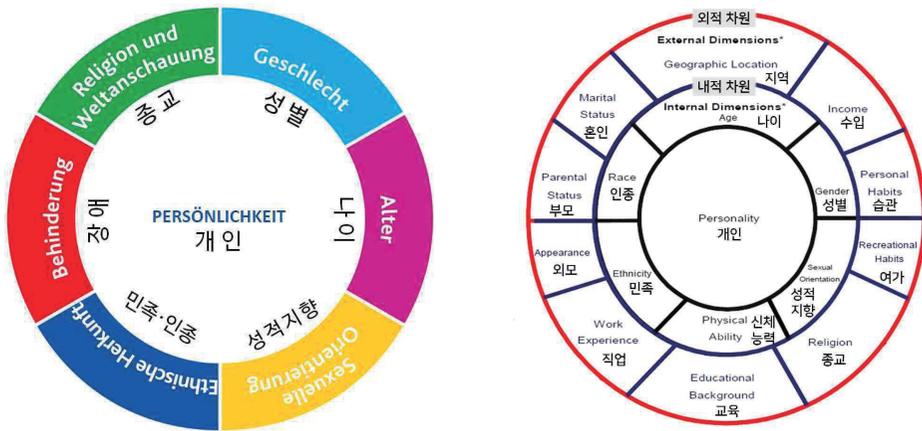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자료출처		
정책지표	정책수립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조례·규칙 수	시·도별 행정자료 수집		
	정책실행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건수			
	정책예산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예산			
여건지표	기반시설여건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관·시설 수			
	자원여건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관련단체 수			
	지원인력여건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인력 수			
활동지표	향유 활동	참여도	문화예술 향유활동 비용	소수자 대상 설문조사 (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청소년, 여성, 노인)	
			문화예술 향유활동 참여도		
		친밀도	소수자가 체감하는 사회적 호감도		
		만족도	문화예술 향유 관련 정책지원 만족도		
			문화예술 프로그램 만족도		
			문화예술 향유 인프라 만족도		
	포용도	문화예술 향유과정에서 느끼는 포용성 정도			
	평등도	문화예술 향유과정에서 느끼는 평등성 정도			
	창조 활동	참여도	문화예술 창조활동 소득		소수자 대상 설문조사 (여성, 성소수자, 전통문화종사자, 지방문화종사자, 독립문화예술인, 대안문화예술인)
			문화예술 창조활동 참여도		
		친밀도	하류/비주류문화 예술가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호감도		
		만족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정책지원 만족도		
창의성 발현 여건 및 기획 만족도					
문화예술 창작 관련 인프라 만족도					
포용도	문화예술 창조과정에서 느끼는 포용성 정도				
평등도	문화예술 창조과정에서 느끼는 평등성 정도				
인식지표	친밀도	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호감정도	국민 대상 설문조사		
	수용도	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수용가능정도			
	필요도	각 소수자 집단별 공공 지원예산 필요 정도			
	포용도	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포용성 정도			
	평등도	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평등성 정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p.112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2017)는 기존에 개발된 문화다양성 지표를 보완하여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정책 상황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정책의 효과와 수준을 국제사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분류체계를 기본범주와 환경범주의 국제적 기준으로 개선하였다. 소수자 및 소수문화의 범위를 유럽의 다양성 헌장(EU Platform of Diversity Charters)은 각 개인을 성별, 나이, 성적지향, 민족·인종, 장애, 종교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독일 문화다양성 헌장은 개인의 내적차원(Internal Dimensions)과 외적 차원(External Dimensions)으로 분류하여 내적 차원은 나이, 성별, 성적지향, 신체능력, 민족, 인종과 같은 선천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외적 차원은 지역, 수입, 습관, 여가, 종교, 교육, 직업, 외모, 부모, 혼인 등 후천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2017년 지표에서는 1차적 범주(기본영역)로 민족, 국적, 성별, 장애문화, 성적지향, 세대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구분하였고 2차적 범주(환경영역)로 종교, 혼인, 소득, 전통, 지역, 예술취향에 따른 문화적 갈등을 구분하였다.

〈그림 4-1〉 유럽 및 독일의 문화다양성 범주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재인용

2015년도 지표조사와의 차이점은 기존 지표조사에서 일원화되어있던 소수자집단별 지표 항목을 ‘소수자집단별’과 ‘사회적 소수문화 현상’으로 별도로 구분한 것이다. 조사항목으로 소수자 집단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타종교인으로, 사회적 소수 문화 현상은 성별 불평등, 독신 가구 증가, 세대 간 갈등, 주류 문화예술의 독점, 지방 문화 차별,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를 포함하였다. 여기서 2015년도 지표의 독립문화예술

과 대안문화예술을 주류문화예술 독점현상영역으로 통합하였고 여성을 단순한 소수자집단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성별 불평등의 현상으로, 또한 노인 및 청소년을 소수자 집단관련 문항에서 세대갈등관련 문항으로 조정하였다. 지표 항목 2015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정책지표, 여건지표, 활동지표, 인식지표로 구성하였다.

〈표 4-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지표(2017)

구분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자료출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	정책지표	정책수립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규칙 수	시·도별 행정 자료 수집
		정책실행	문화다양성 관련 지원사업 수	
		정책예산	문화다양성 예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설, 자원 및 인력	여건지표	기반시설여건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기관 및 시설 수	행정 자료 수집
		자원여건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관련 단체 수	
		자원인력여건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인력 수	
소수자 문화 향유활동 및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	활동지표	인지도	문화다양성 의미에 대한 이해도	소수자 대상 설문조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친밀도	일상생활에서 소수자의 사회적 거리감	
		포용도	소수자에 대한 포용도	
		수용도	국민의 소수 문화 수용도	
		만족도	문화다양성 정책 만족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인식지표	인지도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국민 대상 설문조사
			국민의 문화다양성 가치 평가	
		관심도	소수자 문화와의 거리감	
		필요도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효과성 평가	
		수용도	일반인의 소수자 집단 수용도	
포용도	소수자에 대한 차별 정도 인지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p.80

제3절 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사례

1.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는 인천시는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들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정체성 자체가 문화적 다양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인식하에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 파악 및 인천시에 맞는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지표 개발의 목적은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 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소수자 및 소수문화집단의 활동 정도를 파악하고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여건에 기반한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표는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및 타·시·도와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4-5〉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2017)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자료출처
정책지표	정책수립	문화다양성 조례·규칙·정책 수립 유무·건수	행정자료
	정책실행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건수	
	정책예산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예산	
여건지표	시설여건	문화다양성 지원기관·시설 수	행정자료 통계자료
	자원여건	문화다양성 단체 수	
	인력여건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 수(여성 비율)	
활동지표	인지도	소수자/문화예술가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사업) 인지도	소수자 대상 설문조사
	수용도	소수자/문화예술가가 체험하는 사회적 수용도	
	참여도	소수자/문화예술가 문화예술활동 참여도	
		소수자/문화예술가 문화예술 시설·자원·인력 활용도	
평등도	소수자/문화예술가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 평등도/차별도		
인식지표	인지도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인지도(직간접 이미지)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수용도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수용도(이웃, 동료, 가족)	
	참여도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참여도(교류/참여 의향, 교류/참여 경험)	
	평등도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우선지원 필요도	
	찬반여부	인천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찬반 여부	

자료 : 최영화 외. 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p.vii

지표 영역은 문화다양법상의 실태조사 항목과 기 개발된 문화다양성 지표항목을 준용연계하였고 지표의 분류체계는 지표-세부지표-조사항목(문항) 체계로 구성하였다. 지표는 크게 정책지표, 여건지표, 활동지표, 인식지표의 네 개 부문으로 구성되고 각 세부지표로 정책지표는 조례·제도·정책, 사업, 예산, 여건지표는 시설, 자원, 인력, 활동지표는 소수자와 소수문화 단체 활동 인지도, 수용도, 참여도 평등도, 인식지표는 일반시민의 소수자/소수문화 인지도, 수용도, 참여도, 평등도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자 집단은 4개의 범주(지역, 젠더, 장애, 세대)로 구분하고 소수문화는 독립문화, 전통문화, 생활문화의 3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2.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2018)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산시의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본 방향 및 원칙은 향후 부산시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성을 위한 지표 제공, 부산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지표 설계, 타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부산시 특징 발견, 모호한 개념적 지표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지표로 구성이다. 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선행 연구 분석 및 자문회의를 했으며 부산시 문화다양성 관련 여건 파악을 위해 공공 및 민간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표 4-6〉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2018)

대분류	중분류	주요내용	자료출처
소수 집단	소수집단 접촉경험	각 소수집단별 접촉 경험 정도	시민 대상 설문 조사
	소수집단 인식지표(수용도)	각 소수집단별 동네이웃 및 가족으로서의 수용도	
	소수집단 인식지표(포용도)	각 소수집단의 사회적 차별정도 인식	
	소수집단 활동지표	다문화, 장애인, 성소수자, 성별 불평등 관련 경험	
사회 갈등 요소	사회갈등현상 인식지표	각 사회갈등 현상 문항에 대한 인식 정도	
	사회갈등현상 인식지표(수용도)	성별 불평등, 세대 간 갈등 수용도	
	활동수준에 따른 연령대 수용도	동호회, 문화센터 프로그램, 공간 및 안부인사 가능 연령대	
	사회갈등현상 개선 필요도	6개 사회갈등현상 개선필요도	
전반적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문화다양성 관련 5개 문항 인식 정도		

자료 : 부산시부산문화재단. 2018.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 p.44

조사 영역은 ① 소수자(장애인, 인종-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 자녀, 난민, 유학생, 성소수자, 북한 이탈주민), ② 사회갈등(성별불평등, 세대간 갈등, 소득차이로 인한 갈등, 타 지역 출신과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이주민에 의한 갈등)이다. 사회갈등 관련 지표는 부산시 인구통계 특징과 언론 기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사회 갈등 현상을 토대로 자료 구축하였다. 지표 항목은 인식지표와 활동지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3.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2017)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의 현황을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형태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본 방향 및 원칙은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수준 진단, ‘소수자’에서 ‘소수성’으로 확대된 문화다양성 개념 반영, 응답자 특성에 따른 시민인식 분석,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 가능, 문화다양성 개념 범위의 조정, 일반시민 대상, 고양시의 지역성 반영 등 고려이다. 조사 영역은 지원 정책 분석(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기반 여건 분석(기반시설 여건, 문화기반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시민 인식 조사이며 지표 항목은 정책지표 여건지표 인식지표이다.

〈표 4-7〉 고양시 문화다양성 지표(2019)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자료출처
지원정책	정책수립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된 조례·규칙의 수	현황자료 분석
	정책실행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된 지원사업의 수	
	정책예산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지원예산	
기반여건	기반시설여건	문화예술 활동 지원기관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문화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인식조사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문화다양성 인지 여부,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가치에 대한 필요성, 고양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시민 대상 설문조사
	고양시 내의 차별과 소수자	소수자로서의 차별 경험, 각 구성원들에 대한 거리감, 소수자 인식 여부, 사회적 현상 발현 정도,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 충분성	
	문화예술적 참여와 표현	문화예술활동 참여 정도, 참여중인 문화예술 활동과 방식, 문화예술활동 향유의 걸림돌,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표현에 대한 고양시의 지원, 문화적 현상 발현 정도, 문화적 현상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 충분성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수용도	개인적 수용 정도	

자료 : 권선영 외. 2019.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p.81

제4절 시사점

1. 소수자 및 소수문화 영역 구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의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과정에서 소수자 및 소수문화의 범위를 다르게 지정했으며, 이후 실시된 다른 연구에서도 문화다양성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 2013년에는 문화다양성의 영역을 사회문화, 문화정체성, 비주류문화예술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2015년에는 소수자, 하위문화, 비주류문화예술 영역 그리고 2017년에는 소수자, 사회문화현상으로 구분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이슈(예 :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난민 등)를 구체화하여 소수자 및 소수문화 영역에 포함한 경우도 있다.

〈표 4-8〉 문화다양성 지표의 소수자, 소수문화 범위 비교

구분	문광부(2013)	문광부(2015)	문광부(2017)	인천시(2017)	부산시(2018)	고양시(2019)
소수자	국적 언어 권역 종교 여성 성소수자 장애	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여성 성소수자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타종교인 성소수자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자녀 난민 유학생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사회 문화 현상	유아/아동 청소년 노인	청소년 노인 전통문화 지방문화	세대간갈등 성별불평등 독신가구증가 지방문화차별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주류 문화예술 독점	청소년 노인	세대간갈등 성별불평등 소득차이로 인한 갈등 타지역 출신과의 가능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이주민에 의한 갈등	국적/민족/인종 차별 종교 간의 갈등 성별 불평등 장애인 차별 고양시 내 지역갈등 주류 문화예술 독점 전통문화 위기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고양시 지역간 문화차이 고양시 문화정체성 부재 고양시 새로운 문화 유입
비주류 문화 예술	독립문화예술 다원문화예술 커뮤니티문화예술 다국적문화예술	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독립문화 전통문화 생활문화		

자료 : 각 연구의 소수자 및 소수문화 범위 내용 참고

소수자의 범위는 민족·인종·국적과 관련하여 다문화이주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난민, 유학생 등이 있었다. 성별·성적 지향과 관련해서는 성소수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을 소수자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신체·정신 장애인 또한 소수자로 구분하기도 했다. 사회문화현상으로는 세대문제와 관련해 청소년·노인의 영역과 전통문화와 지방문화, 그리고 주류문화예술의 독점,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지역간 문화차이 등이 있었다. 그밖에 사회 이슈로서 독신가구 증가, 종교간 갈등, 성별불평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였다. 비주류문화예술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조사에서 독립문화예술, 다원문화예술, 커뮤니티문화예술, 다국적문화예술로 비교적 상세히 구분하였다. 하지만 이후 2015년 조사에서는 독립문화예술과 대안문화예술 등 비주류문화예술의 범주를 단순화 하였으며, 2017년 조사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으로 주류 문화예술의 독점에 대한 조사로 범주로 조정하였다.

2. 지표체계 및 조사항목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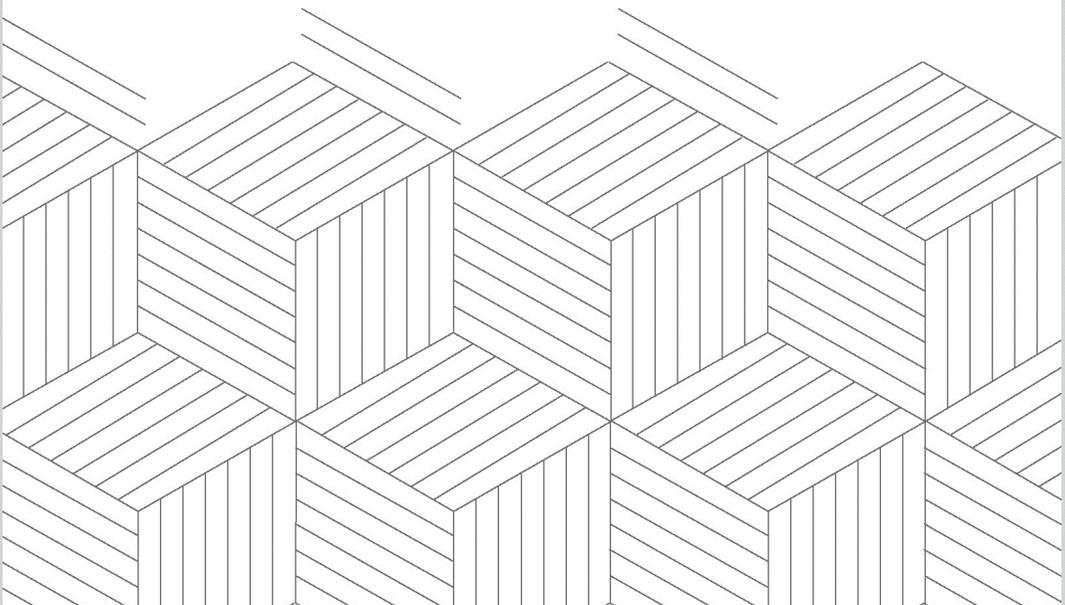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도 지표개발 연구 이후 지표 체계를 정책지표, 여건지표, 활동지표, 인식지표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정책지표는 정책 수립, 실행, 예산에 대한 내용과, 여건지표는 기반시설여건, 자원여건, 지원인력여건으로 구성되었다. 활동지표는 참여도, 인지도, 친밀도 등이 있으며, 인식지표는 인지도, 관심도, 친밀도 등으로 다양하다. 여건지표와 정책지표는 통계자료 및 지자체 자료를 조사하며, 활동지표와 인식지표는 통계조사 및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활동지표는 소수자 및 소수문화 집단의 문화 향유활동이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므로 대상 집단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모든 소수자 집단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정확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수행되고 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만 실시되었고, 부산시와 고양시의 실태조사는 시민인식조사만이 수행되었다.

〈표 4-9〉 문화다양성 지표 체계 및 조사 항목 비교

대분류	중분류	문광부(2015)	문광부(2017)	인천시(2017)	고양시(2019)
정책지표	정책수립	○	○	○	○
	정책실행	○	○	○	○
	정책예산	○	○	○	○
여건지표	기반시설여건	○	○	○	○
	자원여건	○	○	○	×
	지원인력여건	○	○	○	×
활동지표	참여도	○	×	○	×
	인지도	○	○	○	×
	친밀도	○	○	×	×
	만족도	○	○	×	×
	포용도	○	○	×	×
	평등도	○	×	○	×
	수용도	×	○	○	×
인식지표	인지도	×	○	○	○
	관심도	×	○	×	○
	친밀도	○	×	×	○
	수용도	○	○	○	○
	참여도	×	×	○	○
	필요도	○	○	×	×
	포용도	○	○	×	×
	평등도	○	×	○	×
찬반여부	×	×	○	×	

제5장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 제1절 지표 개발 원칙
- 제2절 지표 개발 과정
- 제3절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제5장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제1절 지표 개발 원칙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하여 국가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고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정책 기반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이를 위한 지표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원칙을 따랐다. 수원시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했다. 과도하게 세밀하여 지표 간 배타성이 부족하거나 결여되는 경우 지표로서의 의미가 떨어지게 되고, 지표값 추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실제적인 지표로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명확하고 간단하면서도 수원시의 문화다양성 현황과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지표항목을 선정하려고 했다.⁸⁾

문화다양성법 제8조에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다양성법에서 제시하는 실태조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기존에 개발된 문화다양성 지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타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지표들을 분석하여 수원시의 문화다양성 현황과 인식을 파악하는 지표를 개발하는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가능케 함으로서 수원시 문화다양성의 실태와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8) 각종 성과지표 개발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기준인 SMART 원칙은 명확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원인성(Attributable), 신뢰성(Reliable), 적시성(Timely)으로 되어 있음

〈표 5-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제 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②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2. 문화 향유활동이나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자원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law.go.kr)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에서 ‘문화’는 문화예술이라고 표현되는 협의의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생활양식과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광의의 문화로 보았다. 즉 문화다양성을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장르나 활동의 다양성이기 보다 삶의 양식으로서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확대한다는 사회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지표를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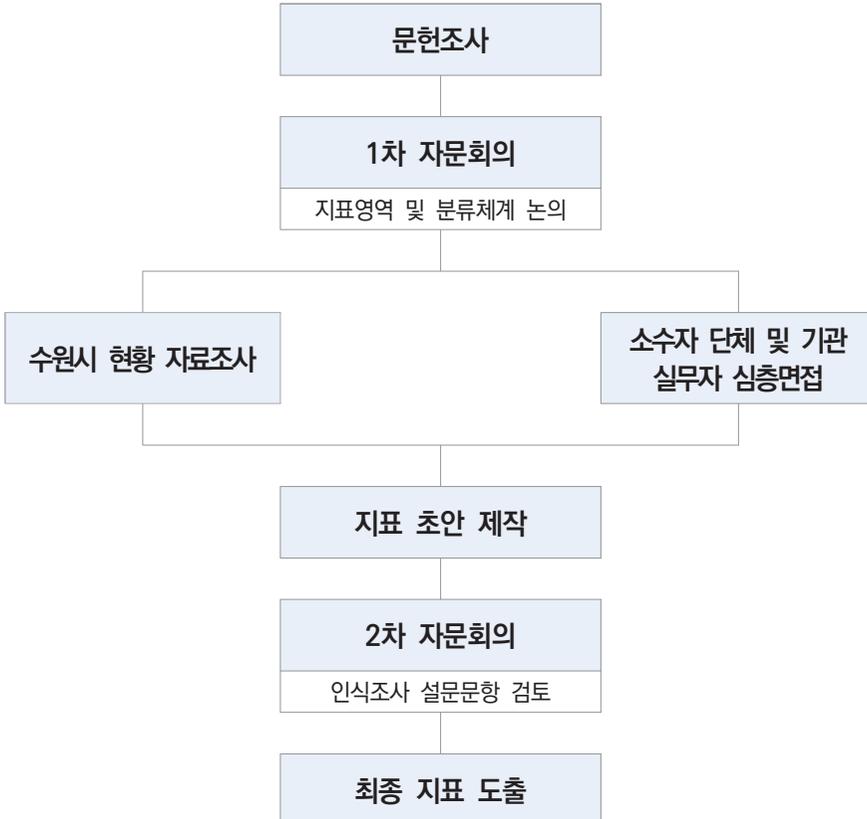
지표체계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실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정량지표를 사용하고 문화다양성 인식과 활동 상황의 조사를 위해서는 정성지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정량지표는 행정자료, 통계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성지표는 소수자 집단의 활동과 인식 및 일반시민의 인식수준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표조사의 결과는 수원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문화다양성의 실태와 인식을 개선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에 개발된 지표는 기존의 지표들을 수원시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한 예비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향후 지표조사를 통해 지표체계, 조사항목, 조사방식 등이 수원시의 문화다양성 현황의 변화와 현실을 파악하고 정책과 연계될 수 있게 수정·보완은 할 수 있지만 지표의 기본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절 지표 개발 과정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을 위하여 자료검토, 자문회의, 소수자 집단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는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의 경험의 공유, 지표설계 원칙의 검토, 지표 개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자문의견을 수렴하였다. 다양한 소수자 집단 관계자 자문을 통해서는 수원시 소수집단 특성을 파악하고 조사대상으로서의 소수자 범위를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시민대상 설문조사 문항 설계에 대해 세부적인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조사문항을 확정하였다.

〈표 5-2〉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절차



1. 지표영역 및 분류체계

전문가 자문⁹⁾으로 일차적으로는 국내에서 수행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및 조사연구의 책임 연구자로부터 지표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지표 개발의 원칙, 지표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5-3〉 전문가 자문 주요의견

구분	자문의견
지표 개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방법 및 표본설계에서 선택된 기존 연구보고서 체계를 유지하되 평가지표 보완 및 기술방식 개선을 통해 국민 인식과 사회적 소수자의 실태를 파악 -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후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지표 도출 -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확정과 인식조사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및 문화다양성 관계자들 대상의 인터뷰 실시
지표 개발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사회적 소수문화와 비주류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일반 수용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소수자문화의 문화향유활동이나 창조활동에 관한 성과를 조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소수자집단의 사회적 관계성, 사회적 활동 및 참여, 차별과 고정관념,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상황이 조사 분석되어야 함 -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시설, 자원 및 정책제도에 관한 현황을 조사해야함 - 이전 2017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기초지자체에 맞는 문화다양성 지표 체계 개선이 요구되며, 대국민 문화다양성 수용성, 사회적 소수그룹 실태, 문화다양성 시설인프라 및 제도현황으로 세부영역의 범주를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관련 주요 개념(문화, 소수자, 문화다양성 정책 등)을 명확히 해야 실제 조사에서 혼란을 피할 수 있음 - 현황 파악 및 접근이 어려운 소수자 그룹에 대한 고려 필요 - 지표를 공통지표와 특수지표를 구분하여 공통지표는 중앙정부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특수지표는 수원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을 추천함 - 수원시의 문화다양성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기초 통계자료 조사와 함께 내부 구성원(소수자, 시민,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 - 지표 항목은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고루 사용해 측정하기 바람 - 관련 자료로 지역문화실태조사, 성인지조사, 예술인실태조사 등을 활용을 추천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개발시 소수자 관련 지역의 단체 및 개인의 의견 반영 - 문화다양성이 아닌 다문화 문제로 치환되는 것, 소수자 중심의 해석에 주의하여야 함 -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에는 수원시 현황을 반영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권장함 - 지역문화실태조사 내에 문화다양성 관련 지표가 일부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음

9) 코로나19로 인해 서면 및 개별 면담으로 수행함

2. 수원시 소수자 집단 현황 파악

활동지표와 인식지표를 위해 다양한 소수자 관련 단체의 책임자 및 실무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자문의견을 수렴하였다. 수원시 소수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소수자 집단의 범주를 설정하였고 시민 대상으로 하는 소수자에 대한 인식조사와 소수자 대상 활동조사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표 5-4〉 소수자 집단 파악을 위한 자문위원 명단

이름	소속/직위	자문 내용
이○○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	외국인노동자 현황
송○○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다문화가족 현황
조○○	수원여성회 대표	여성 현황
사○○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성소수자 현황
한○○	광교노인복지관 관장	노인 현황
이○○	前 수원이주민센터 사무국장	이주민 현황
정○○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장애인 현황
박○○	살롱시소 기획실장	비주류 문화예술 현황
이○○	수원문화재단 팀장	비주류 문화예술 현황

〈표 5-5〉 소수자 집단 파악을 위한 자문 주요내용

구분	자문의견
다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의 외국인 구성은 비교적 단일한 성격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른 도시들과 달리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특성이 있음 - 수원시가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화성, 평택, 천안, 아산 등의 주변 지역 외국인들의 왕래가 잦고, 삼성전자가 있는 영통구 지역에는 고급 산업 인력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수원시와 주변의 대학들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교환교수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음 - 다양하고 복합적인 외국인 구성으로 인해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다문화정책팀, 다문화지원팀, 외국인지원팀이 있어 정책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에 수용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장애인에 대한 수원시민의 인식은 평균 이상으로 생각됨 - 수원시는 장애인 관련 기관과 시설이 많아 외부에서 이를 이용하기 위한 유입이 많음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촉 빈도를 늘리는 것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외부와 활동/접촉하는 횟수(빈도, 시간), 활동/접촉 목적(여가/직업)을 지표에 포함할 것을 제안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여성 관련단체는 운동단체 7개, 직능단체 16개가 있음 - 수원시는 2010년 2월(2015년 재인증)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인증전보다 상황이 나아졌으나 추후 개선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낮은 상황에 대한 고민과 문제 제기가 필요함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청소년 활동은 입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성이 적은 한편 학교밖 청소년 증가에 따른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수원시만의 특별한 청소년 이슈가 있지는 않으며 다만 주민참여예산제 등에서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는 비교적 노인 비율이 낮은 편이나 전국적인 추세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수원시 노인은 농촌 거주 노인과 구분되는, 도시의 환경과 인프라를 누리며 문화향유도가 높은 도시형 노인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노인을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한 하나의 집단으로 총칭하기 어려우며 연령보다는 건강이나 경제력 등에 의해 생활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따라서 노인은 사회적 소수자의 영역에 포함시키기 애매한 요소가 있음 - 수원시는 노인 관련 정책 수행과정에서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편이며 주민자치회 등에서 노인들의 참여가 활발한 편임
성소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거주 성소수자의 규모 및 이들의 성적 지향에 대한 자료는 부재함 - 수원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성소수자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다만 전국 청년 성소수자 네트워크 큐브에 소속된 대학 가운데 수원시 대학들이 있어 지역 청년들의 활동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 법률상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이 포함되기를 바라는데 수원시 인권조례에는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비주류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는 국악, 미술 분야 예술인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상대적으로 연극, 현대무용, 음악창작자의 활동은 저조함 - 수원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인디씬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나 인디 뮤지션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방식의 공연은 많은 편임 - 수원에 청년 예술가들이 많으나 공적 지원을 잘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디 뮤지션들의 경우 수원보다는 오히려 서울, 경기 북부, 충청도 등에서 활동하고 있음 - 예술가나 작품에 대한 접촉경로, 가치사슬 등을 평가할 수 있다면 문화다양성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3. 인식조사 설문문항 검토

인식지표를 위한 시민대상 설문조사는 인식지표의 분류에 맞춰 소수자 및 소수문화에 대한 수원시민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설계 과정에서도 세부문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하였다.

주요 자문의견으로 인식조사의 많은 부분이 소수자 및 소수문화에 대한 차별에 초점을 두면서 인권실태조사와 중복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소수자 집단 및 소수문화 분류에 대한 재검토, 문화다양성의 범위 또는 소수자 및 소수문화의 차별정도 등에서 지시하는 지리적 범위의 불명확성, 문화다양성, 소수자 및 소수문화 등의 개념의 추상성을 구체적이고 응답자가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제시하는 것의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다. 이에 인권실태조사나 다문화 실태조사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중복성을 피하고 소수자 집단 및 소수문화 분류를 제한적인 특정 소수자 집단으로 지정하기보다 소수자를 분류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문화적 양태와 표현의 차이로 분류했다. 또한 설문문항에서 지시하는 문화다양성이나 문화적 차별 발생 범위를 수원시로 명확히 한정하였으며 가능한 개념적 용어보다는 구체적인 어휘로 서술하고자 했다.

제3절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1. 지표영역 및 분류체계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영역은 2015년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문화다양성 지표 및 2017년 실태조사를 위해 개선한 지표를 참고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국가지표와 연계성을 제고하였다. 문화다양성 지표가 초기에는 다문화지표와 동일시되어 주로 다문화 이주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수용도를 중심으로 논의되다가 최근에는 그 범위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청소년, 비주류 예술인 등 한국사회의 주류 집단이 아닌 사회적 소수자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만족도와 인지도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국가지표에서도 민족, 국적, 성별, 장애문화, 성적지향, 세대의 기본영역(일차적 범주)과 종교, 소득, 혼인, 전통, 지역, 예술취향의 환경영역(이차적 범주)을 기준으로 하여 영역을 분류하고 있다.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분류 체계는 대분류는 국가지표 체계와 동일하게 정책지표, 여건지표, 활동지표, 인식지표로 구성하였으나 세부지표는 수원시의 소수자 및 소수문화 영역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의 소수자 및 소수문화 영역은 국가지표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수원시 현황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수원시 지표의 영역은 ① 민족·인종·국적, ② 종교·정치적 신념 (타 종교,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③ 신체·정신적 장애, ④ 성별, ⑤ 성적 지향·성 정체성, ⑥ 연령·세대, ⑦ 출신 지역, ⑧ 소수 문화 취향 (비주류 예술 선호, 채식,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으로 구분하였다.

정책지표 및 여건지표는 정기적으로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활용해 자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확하면서 측정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고 적시에 자료수집이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정책지표 및 여건지표는 중앙정부의 문화다양성 지표의 영역과 조사항목과의 비교와 연계를 고려하였다. 정책지표는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수립 건수, 관련 지원사업 건수, 문화다양성 지원 사업 예산으로 구성된다. 여건지표는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 기관/시설 수, 관련 단체 수, 지원 인력 수로 평가한다.

활동지표는 소수자 및 소수문화와 관련한 활동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활동지표의 세부내용으로는 소수자 및 소수문화 집단들이 인식하는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및 가치 평가, 일상에서의 소수자의 사회적 거리감,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도, 시민들의 소수문화 수용도, 소수자들의 사회 정책 참여도, 문화다양성 정책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지표는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측정하게 된다.¹⁰⁾

10) 실제적인 소수자 및 소수문화 대상 활동지표 조사는 성소수자 집단 같이 조사대상 집단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조사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인식지표는 일반시민의 소수자 및 소수문화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 포용도, 수용도, 필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인식지표는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및 가치평가, 소수자 및 소수문화에 대한 관심과 경험, 차별인지도, 수용가능도와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해 구성된다. 지표의 측정은 시민대상 인식조사를 통해 평가하게 되는데 인식조사는 추상적인 문화다양성의 개념이나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표 5-6〉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체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조사방법
정책지표	정책수립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수립 건수	행정자료
	정책실행	문화다양성 관련 지원사업 건수	
	정책예산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예산	
여건지표	시설여건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 기관/시설 수	행정자료 통계자료
	자원여건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관련 단체 수	
	인력여건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 인력 수	
활동지표	인지도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및 가치 평가	소수자 대상 설문조사
	친밀도	일상생활에서 소수자의 사회적 거리감	
	포용도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도(차별 인지)	
	수용도	시민들의 소수문화 수용도	
	평등도	소수자들의 사회/정책 참여도	
	만족도	문화다양성 정책 만족도	
인식지표	인지도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및 가치 평가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관심도	소수자/소수문화에 대한 관심과 경험	
	포용도	소수자/소수문화에 대한 차별 인지도	
	수용도	소수자/소수문화에 대한 수용 가능성도	
	필요도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성	

2. 수원 시민대상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문문항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는 총 6개 영역 17개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소수자 집단 및 사회적 소수문화 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인지도, 관심도, 포용도, 수용도, 필요도의 5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인지도는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이고, 관심도는 소수자 및 소수문화 관련한 현상에 대한 관심과 견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포용도는 문화적 차별에 대한 포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고, 수용도는 소수자 및 소수문화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지표이며, 필요도는 소수자 및 소수문화와 관련한 문화다양성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표 5-7〉 수원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문문항 구성

지표	영역	세부 항목
인지도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가치	문화다양성의 의미, 문화다양성 가치 평가
관심도	소수자·소수문화에 대한 관심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 소수자 분포 정도, 소수자/소수문화 관련 현상에 대한 견해
포용도	문화적 차별 경험 및 인식	문화적 차별 경험(차별 유형, 대응 방법), 혐오표현(차별적 표현) 경험, 혐오표현에 대한 견해, 수원시에서의 문화적 차별 정도
수용도	소수자·소수문화에 대한 수용	소수자/소수문화 상황에 대한 수용, 소수자에 대한 수용 가능 정도
필요도	수원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성	문화다양성 활동 경험, 소수자의 정책 참여 보장도,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평가,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성,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문화다양성 사업
인구학적 특성	응답자 정보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직업, 소득, 가구원 수, 거주지, 거주기간

수원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문문항

I.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가치

1. 귀하는 '문화다양성'의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계십니까?

- '문화다양성'이란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들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언어, 민족, 종교, 성 정체성, 문화적 취향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알고 있다 ⑤ 잘 알고 있다

2. 귀하는 현재 수원시가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귀하는 수원시에 문화다양성의 가치(의미)를 보다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II. 소수자·소수문화에 대한 관심

4. 귀하는 다음 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 거리감(불편함)을 느끼십니까?

항목	전혀 거리감이 들지 않음	별로 거리감이 들지 않음	보통	약간 거리감을 느낌	매우 거리감을 느낌
1) 나와 다른 민족·인종·국적의 사람	①	②	③	④	⑤
2) 나와 다른 종교·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 (타 종교,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다른 신체·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	①	②	③	④	⑤
4) 나와 다른 성별의 사람	①	②	③	④	⑤
5) 나와 다른 성적지향·성정체성을 가진 사람	①	②	③	④	⑤
6) 나와 다른 연령·세대의 사람	①	②	③	④	⑤
7) 나와 다른 출신지역 사람	①	②	③	④	⑤
8) 나와 다른 소수 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 (비주류 예술 선호, 채식,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	①	②	③	④	⑤

5. 귀하의 주변에는 다음 구성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항목	전혀 아는 사람 없음	알고는 있지만 친분은 없음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 있음
1) 외국인 (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등)	①	②	③
2) 북한이탈주민	①	②	③
3) 장애인	①	②	③
4) 성소수자	①	②	③
5) 타 종교·정치적 신념을 지닌 사람 (타 종교,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①	②	③
6) 소수 문화 취향을 지닌 사람 (비주류 예술 선호, 채식,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	①	②	③

6. 귀하는 다음의 사회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문제라고 생각 안함	별로 문제라고 생각 안함	보통	문제가 있음	매우 문제가 심각함
1) 민중·인종·국적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⑤
2) 종교·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 (타 종교,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①	②	③	④	⑤
3) 신체·정신 장애에 대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4) 성별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⑤
5) 성적지향·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⑤
6) 연령·세대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⑤
7)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⑤
8) 소수 문화 취향에 대한 차별 (비주류 예술 선호, 채식,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	①	②	③	④	⑤

Ⅲ. 문화적 차별 경험 및 인식

※ 7~10번 문항은 문화적 차별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3년간 수원시에 거주 또는 상주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7. 최근 3년간 귀하가 수원시에 거주 또는 상주하면서 타인과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전혀없다 → 8번으로 이동
 - ② 거의없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있다
 - ⑤ 매우많다
- 7-1번으로 이동

7-1. 다음 중 귀하가 받은 차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있음	없음
1) 민종·인종·국적에 따른 차이	①	②
2) 종교·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이 (타 종교,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①	②
3) 신체·정신 장애에 대한 차이	①	②
4) 성별에 따른 차이	①	②
5) 성적지향·성정체성에 따른 차이	①	②
6) 연령·세대에 따른 차이	①	②
7) 출신지역에 따른 차이	①	②
8) 소수 문화 취향에 대한 차이 (비주류 예술 선호, 채식,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	①	②
9) 기타 (이유 : _____)	①	②

7-2. (7-1의 '있음' 응답자) 귀하는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까? (중복선택 가능)

- ①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므로 무시함
- ② 기분이 안 좋았지만 참고 넘어감
- ③ 당사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함
- ④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함
- ⑤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조정을 요구함 (예 : 민원 제기, 심의 및 시정 요구 등)

8. 귀하가 수원시에 거주 또는 상주하면서 사람들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8-1번으로 ② 아니오 → 9번으로

8-1. 귀하는 다음 대상을 향한 혐오표현을 얼마나 자주 보거나 들었습니까?

항목	전혀 경험 안함	거의 경험 안함	가끔 경험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1) 외국인 (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등)	①	②	③	④	⑤
2) 북한이탈주민	①	②	③	④	⑤
3)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4) 성소수자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성별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연령·세대	①	②	③	④	⑤
7) 특정 지역 출신자	①	②	③	④	⑤
8) 종교·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 (타 종교,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①	②	③	④	⑤
9) 소수 문화 취향을 지닌 사람 (비주류 예술 선호, 채식,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	①	②	③	④	⑤

9. 귀하는 다음의 표현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라는 데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 안함	거의 동의 안함	보통	어느정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여자들은 의무는 기피하고 권리만 추구하며 남자한테 기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할 질환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난민을 즉각 추방하자, 외노자들 다 쫓아라	①	②	③	④	⑤
4) 노인층, 틀딱층, 노술아치	①	②	③	④	⑤
5) 정신 병자 같다, 장애인은 집에나 있어라	①	②	③	④	⑤

10. 최근 3년간 수원시에서는 다음의 사회 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나타나지 않음	거의 나타나지 않음	보통	약간 나타남	매우 나타남
1) 민중·인종·국적에 대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2) 종교·정치적 신념에 대한 차별 (타 종교,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①	②	③	④	⑤
3) 신체 및 정신 장애인 차별	①	②	③	④	⑤
4) 성차별	①	②	③	④	⑤
5) 성적지향·성정체성에 대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6) 연령·세대별 차별	①	②	③	④	⑤
7) 출신지역 차이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⑤
8) 소수 문화 취향에 대한 차별 (비주류 예술 선호, 채식,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	①	②	③	④	⑤

IV. 소수자·소수문화에 대한 수용

11. 귀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민중 인종 국적	우리나라에 다양한 인종, 민족의 문화가 많이 들어오는 게 싫다.	①	②	③	④	⑤
	피부색이 다르면 국적 취득이나 한국어 능력과는 상관없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본국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종교 신념	나와 다른 종교의 교리와 의식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종교 및 신념이 다른 사람과 깊이 친해지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장애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학 입학, 취업 전형을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사는 지역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특수학교가 들어와도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⑤
성적 지향 정체성	성 소수자가 나오는 영화, 소설,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성 소수자 축제(퀴어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성별	중요한 업무를 할 때 상대방의 성별은 아무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⑤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만드는 방송, 영상 등의 미디어를 접하는 게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연령 세대	세대차이가 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출신 지역	출신 지역이 같은 사람에게 더욱 친근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소수 문화 취향	소수 문화(비주류 예술, 채식,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를 즐기는데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독립/예술 문화예술가의 창작을 위해 공공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는 다음 구성원들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실 수 있습니까?

항목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음	동네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음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1) 외국인 (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등)	①	②	③	④
2) 북한이탈주민	①	②	③	④
3) 장애인	①	②	③	④
4) 성소수자	①	②	③	④
5) 종교·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	①	②	③	④
6) 소수 문화 취향을 지닌 사람	①	②	③	④

V. 수원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성

13. 귀하는 수원시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 관련 교육, 축제 및 행사, 자원봉사 등)

항목	있음	없음
1) 외국인(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등) 관련 활동	①	②
2)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	①	②
3) 장애인 관련 활동	①	②
4) 성소수자 관련 활동	①	②
5) 성별 불평등 관련 활동	①	②
6) 연령·세대(청년, 노인 등) 관련 활동	①	②
7) 종교·정치적 신념 관련 활동 (타 종교,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①	②
8) 소수 문화 관련 활동 (비주류 예술 선호, 채식,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	①	②
9) 기타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_____)	①	②

14. 수원시 정책에서는 소수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귀하는 수원시에서 현재 문화다양성 정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문화다양성 캠페인, 교육지원, 혐오표현 규제 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귀하는 수원시에서 다음과 같은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문화다양성 캠페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등 가치 확산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학생 및 시민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 활동 접근성 향상	①	②	③	④	⑤
4) 이주민, 소수자 등 문화다양성 예술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거점기관 조성	①	②	③	④	⑤
6) 지역별 문화다양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적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강화	①	②	③	④	⑤
8)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예산, 제도, 인력 등) 구축 사업	①	②	③	④	⑤

17. 귀하는 수원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문화다양성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다양성 캠페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등 가치 확산 지원
- ② 학생 및 시민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지원
- ③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 활동 접근성 향상
- ④ 이주민, 소수자 등 문화다양성 예술 활동 지원
- ⑤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거점기관 조성
- ⑥ 지역별 문화다양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⑦ 문화적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강화
- ⑧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예산, 제도, 인력 등) 구축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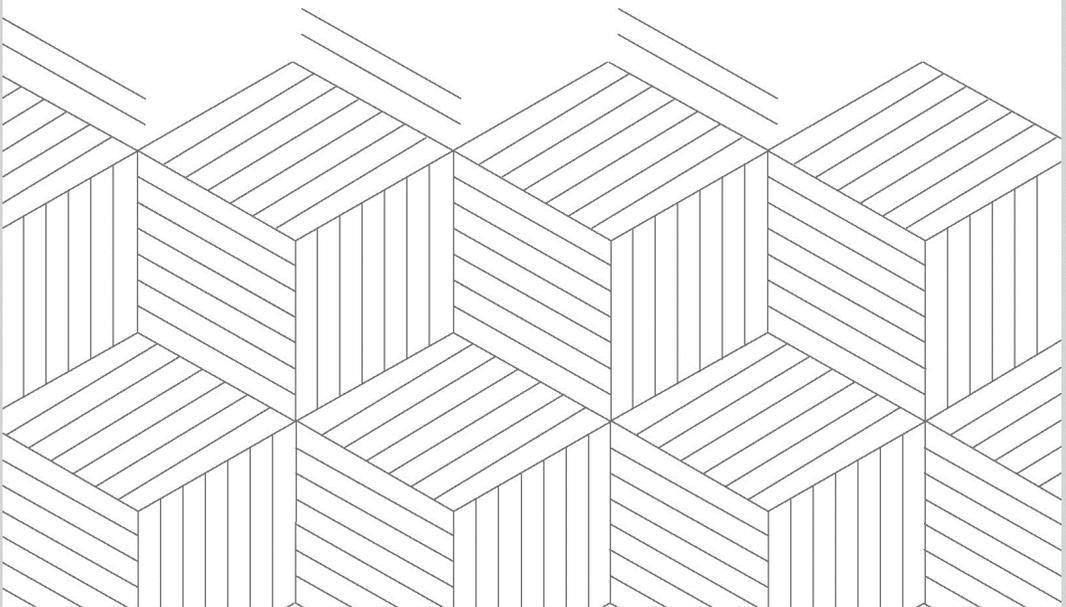
VI. 응답자 정보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연령	만 (____) 세
최종 학력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전문대 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재학 이상	직업	① 판매·영업·서비스직 ② 일반 사무직 ③ 생산·기술직 ④ 교육·전문직 ⑤ 농·임·어업·축산업 ⑥ 학생 ⑦ 전업주부 ⑧ 무직 ⑨ 기타
월 평균 가구 소득 (세전)	① 100만원 미만 ② 100이상 ~200만원 미만 ③ 200이상 ~300만원 미만 ④ 300이상 ~400만원 미만 ⑤ 400이상 ~500만원 미만 ⑥ 500이상 ~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⑧ 잘 모름	가구원 수	(____)명
거주 지역	① 수원시 팔달구 ② 수원시 영통구 ③ 수원시 장안구 ④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총 거주기간	(____)년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유네스코는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이 협약의 국내 비준 및 발효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정책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등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자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수원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문과 협약문, 국내 관련법 조항을 검토하고,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중앙·지방 정부의 지표개발 보고서, 학술지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지표에 필요한 항목을 선별했다. 국가 통계자료는 수원시 문화다양성 현황을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수원시의 소수자 현황은 통계자료를 비롯하여 소수자 및 소수문화 집단(다문화,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비주류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문화다양성 지표 항목 및 설문조사 문항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 회의를 실시하였다.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의 영역은 소수성에 따라 ① 민족·인종·국적, ② 종교·정치적 신념(타 종교,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③ 신체·정신적 장애, ④ 성별, ⑤ 성적 지향·성 정체성, ⑥ 연령·세대, ⑦ 출신 지역, ⑧ 소수 문화 취향(비주류 예술 선호, 채식,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으로 구분하였다. 지표체계는 국가지표 체계에 맞춰 크게 정책지표, 여건지표, 활동지표, 인식지표로 구성하였고, 수원시 소수자 및 소수문화 현황을 고려하여 세부 지표를 조정하였다. 정책지표는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수립 건수, 관련 지원 사업 건수, 문화다양성 지원 사업 예산으로 구성된다. 여건지표는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 기관·시설 수, 관련 단체 수, 지원 인력 수로 평가한다. 활동지표는 소수자 및 소수문화와 관련한 활동정도를 파

악하기 위한 지표로, 소수자 및 소수문화 집단들이 인식하는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및 가치 평가, 일상에서의 소수자의 사회적 거리감,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도, 시민들의 소수문화 수용도, 소수자들의 사회 정책 참여도, 문화다양성 정책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인식지표는 일반시민의 소수자 및 소수문화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 포용도, 수용도, 필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는 총 6개 영역 17개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소수자 집단 및 사회적 소수문화 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인지도, 관심도, 포용도, 수용도, 필요도의 5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는 수원시의 문화다양성 정책, 여건, 활동, 인식 실태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일한 항목의 정기적인 지표조사 시행을 통해 수원시의 문화다양성 정책, 여건, 활동의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수원시의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즉 정기적인 지표 조사를 통해 수원시의 문화다양성 현황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정기적인 지표조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수원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정기적인 지표 조사 및 통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행정 자료, 소수자, 시민 의견 조사 등 다방면의 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민 인식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수요와 의식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장수요에 기반한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 정책 효과 및 시민들의 정책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소수자 및 소수문화에 대한 수원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소수자 및 소수문화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포용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확대는 문화적으로 풍부한 수원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2절 정책적 제언

수원시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수원시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 제정이 포함되면서 조례 제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부천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문화다양성, 성소수자, 인권 등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들이 발생하면서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문제¹¹⁾로 실제 제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문화다양성 정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다양성 증진에 대한 수원시의 관심과 정책방향을 대외적으로 선언한다는 의미에서도 조례 제정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수원시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문화적 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 갈등의 없다. 그렇지만 문화다양성에 대한 몰이해나 일부 문구에 대한 오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면서 추진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다양성 조례에는 정기적인 문화다양성 지표 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정기적인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실태조사는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 도입에 앞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인 시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수준 제고와 이해도 증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기본사항에 해당한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소수자 집단 및 소수문화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수원시 실정에 맞는 소수자 및 소수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여 대상집단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문화다양성 지표의 지표 항목 및 내용은 다양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하다. 문화다양성 정책이 확대되면 행정자료 수집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사회적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대상 집단도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표를 점검해야 한다. 이번에 개발한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에는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를 근거로 하는 정책지표와 여건지표,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활동지표, 시민들의 소수자 및 소수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인식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지표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인식지표와 활동지표를 통해 수립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정책수요의 측정하고 이를 통해 지표를 보완하는 환류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비전의 수원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수원시 문화다양성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은 현재의

11) 2019년 기준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독교 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난 사례가 있음

여건과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4년 단위의 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¹²⁾ 기본계획 수립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새로 제정되는 문화다양성 조례(안)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다양성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연속성, 효과성을 위해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와 환류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다양성 정책이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문화다양성 사업의 대상, 내용, 결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양한 집단들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에 여러 부서의 업무로 분산되어 있어 관련 부서간의 협업체계가 필수적이다. 문화다양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된 부서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협의체에는 문화예술과, 인권담당관, 다문화정책과, 여성정책과, 도서관사업소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관계를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협의체는 관련 부서들만이 아니라 중간지원조직 및 지역 내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정책협의체의 주요 운영내용은 주요 사업 진행경과 공유, 관련 당사자 간 협의, 신규 사업 논의 등이 해당된다.

1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문체부 장관은 4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음

| 참고문헌 |

- 권선영·황설화(2019),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 남북하나재단(2017), 북한이탈주민 시군구별 실태보고서 : 10대 주요 거주 지역별, 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보고서, 남북하나재단
- 라도삼·조윤정·이정현(2018),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5),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 2. 20 배포)
- 부산시·부산문화재단(2018),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부산문화재단
- 새문화정책준비단·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수원시(2018), 수원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수원시
- 유네스코(2001),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전문
- 유네스코(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전문
- 유네스코(2015), 문화정책의 재구성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10년 동안의 문화다양성 표현 증진
- 이성호(2019), 수원시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이영안(2018),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9~2023), 수원시정연구원
- 이영안(2019), 수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최영화·김창수·민경선(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한건수(2015), 한국 사회와 문화다양성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 국제이해교육연구, 10권 2호, pp.163-199
- 한연주(2019), 수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국가통계포털 kosis.kr

수원시청 suwon.go.kr

수원시 포토뱅크 photo.suwon.go.kr

통계로 보는 수원 stat.suwon.go.kr

| 부 록 |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전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 문화다양성법)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91호, 2014. 5. 28.,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044-203-251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 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 라.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 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
 - 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연구 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9.>
 -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 6. 9.>
 1.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시행일 : 2020. 12. 10.] 제7조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차보고)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 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2.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유네스코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①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 ②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2691호, 2014. 5.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문화다양성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044-203-2516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인 국무총리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국무총리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관이 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1. 정기조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 2. 수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 ②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 2. 문화 향유활동이나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
 -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자원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4.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 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긴급성, 사회구성원의 참여도,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약, 법령 및 정책의 내용
2.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내용
3.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8>까지 생략

<20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0>부터 <388>까지 생략

Abstract



A Study on Indicators of Cultural Diversity in Suwon

UNESCO adopted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in 2005, and it was ratified and became effective in 2010.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was enacted in 2014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Accordingly, Suwon City is making efforts to promote policy projects to realiz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such as enacting the Ordinance on Cultural Diversity.

A prior study on the policy development of cultural diversity in Suwon City (Seongho Lee, 2019) raised the necessity of focusing on improving citizens' awareness rather than supporting minorities and minority cultural groups. In order to realize an integrated social policy to improve citizens' awareness, continuous grasp of the current state of cultural diversity is required, so that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that becomes the basic framework of the survey is required in advance.

Therefore, in this study an indicator was develop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cultural diversity in Suwon. The areas of Suwon's cultural diversity indicators are: ① people/race/nationality, ② religion and political beliefs (other religions, feminism, ecologism, etc.), ③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y, ④ gender, ⑤ sexual orientation/gender identity, ⑥ age/generation, ⑦ region of origin, ⑧ minority cultural preference (preferential non-mainstream arts, vegetarianism, tattoo, piercing, cosplay, etc.). The indicator system was composed of policy indicators, condition indicators, activity indicators, and recognition indicators in the same way as the national indicator system, but the detailed indicators were set in consideration of the minorities and their cultural areas in Suwon City. The

policy indicators consist of the number of policy establishments related to cultural diversity, the number and budget of related support projects. The condition indicator is evaluated by the number of public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supporting minority cultural diversity activities, the number of related non-governmental or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 number of support personnel. The activity indicator, which is for understanding the degree of activity related to minorities and their cultures, consist of the evaluation of understanding and value about the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social sense of distance in daily life, social tolerance to minorities, degree of social acceptance of minority culture, the degree of participation of minorities in social policy,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cultural diversity policy recognized by minorities. The recognition indicators are the ones that identifies the level of recognition, interest, inclusion, acceptance, and necessity of minority cultures of ordinary citizens.

Keyword : Cultural Diversity Indicators, Minority, Minority Culture, Cultural Diversity, Multiculturalism

| 저자 약력 |

최지연

사회학 박사수료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E-mail : choi.jiyoun@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수원시 미디어정책 연구 (2019,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문화재정 분석 연구」 (2019, 수원시정연구원)

심지은

사회학 석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E-mail : jieun@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수원시 미디어정책 연구 (2019,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문화재정 분석 연구」 (2019, 수원시정연구원)

